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2권 제4호(통권 제128호)

2021 · 겨울호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는 형사정책분야에 관한 논문, 서평, 번역 등을 수록하는 학술지입니다.

본지의 발간목적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유로운 발표의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북돋우고 형사정책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논문의 의견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고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28호, 2021·겨울호)

[연구논문]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남성의 유형화와 데이트폭력 차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 홍세은 · 한민경 1

아동학대에 대한 젠더 분석: 남성성, 돌봄, 재생산권

▶ 추지현 33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 조은경 · 박지선 63

미국 낙태제한입법의 흐름: 심장박동법과 향후 전망

▶ 황태정 91

일본에서의 보안처분 제도 도입과 그 한계에 관한 검토

▶ 배상균 · 손여옥 117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32, NO. 4 (December, 2021)

[Article]

- Typologies of Male Adults based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and the Differences in Dating Violence:
A Latent Profile Analysis
▶ Hong, Seeun · Han, Min Kyung 31
- Gender Anlysis of Child abuse: Masculinities, Caring, Reproductive Rights
▶ Choo, Jihyun 61
- 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Homicide by Offender's Ethnicity
and Gender
▶ Eunkyung Jo · Jisun Park 90
- The Flow of Abortion Restriction Legislation in the US: The Heartbeat Act
and Future Prospects
▶ Hwang, Tae-Jeong 115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limitations of the security measures in Japan
▶ Bae Sangkyun · Son Yeook 147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남성의 유형화와 데이트폭력 차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홍세은** · 한민경***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15」 자료 중에서 성인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트폭력 가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성격 특성 및 폭력태도를 기준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여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수준이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관계안정형, 폭력억제형, 폭력관용형, 폭력지향형의 4가지 하위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관계안정형은 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었으며, 폭력억제형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폭력에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관용형은 폭력억제형과 유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폭력에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력지향형은 폭력관용형보다 훨씬 더 폭력에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하위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모두에서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억제형이 폭력관용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보이는 결과는, 폭력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 행동의 발현을 억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의 시행이나, 폭력 관련 태도의 교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1>.

❖ 주제어 : 데이트폭력, 유형화, 성격 특성, 폭력태도, 잠재 프로파일 분석

* 이 논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15-AA-13)의 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동 학술지에서 발간된 홍세은·정지수의 논문(2019)과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해당 논문과는 독립된 후속연구임.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교신저자(m.han@police.ac.kr)

I. 서론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시작한 범죄가 교제살인으로까지 비화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책적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의 데이트폭력 관련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2013년에 비해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전체 검거 건수 중 7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¹⁾ 데이트폭력이 가벼운 다툼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는 데이트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과 예방 또는 중단을 위한 개입방안의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이 어떤 특성에 의해 촉발되었는지 밝혀내어 이러한 특성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중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형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온 데 비해(김현수·신윤미·조선미·정영기·임기영, 2004; 장희숙·김예성, 2004; Elbow, 1977; Faulk, 1974; Gondolf, 1988; Saunders, 1992; Hamberger, Lohr, Bonge, & Tolin, 1996; Holtzworth-Monroe & Stuart, 1994; Jacobson & Gottman, 1998),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특성을 유형화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견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형화 연구들이 데이트폭력 또한 포섭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자녀나 양가 가족 등 다른 이들의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유형화와는 별도로 데이트폭력 측면에서의 유형화를 통한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남성을 배제하고 가해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해행동을 한 경험이 없는 남성과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김현수 외, 2004; 장희숙·김예성, 2004; Elbow, 1977; Faulk, 1974; Hamberger & Hastings, 1986).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9. 2.).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5쪽.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해행동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남성 전체를 연구대상의 모집단으로 하여, 성격 특성 및 폭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들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성격 특성 및 폭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분된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행동의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폭력의 측면에서 성인 남성들을 유형화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을 가해행동을 하지 않는 남성들의 특성과 비교하고, 데이트폭력에 가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각 하위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트폭력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데이트폭력의 개념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을 의미한다(김정란·김경신, 1999; 이숙정·권호인, 2021;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데이트폭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후 관계에 부정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정서폭력이나 행동통제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구분된다(구혜영, 2017; 김동기, 2009; 사공은희, 2007).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폭력이라고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중재 또는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행동을 데이트폭력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일부 학자들은 신체폭력과 성적폭력을 아울러 데이트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Makepeace, 1981), 데이트폭력을 신체적인 폭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Lloyd, Koval, &

Cate, 1989; Sugarman & Hotgaling, 1989),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도 데이트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오윤희·임성문, 2019). 언어적인 위협이나 상대를 향한 위협적 행동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데이트폭력의 정의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Anderson & Danis, 2007), 신체적·성적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언어적 폭력,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 폭력과 같은 간접적인 통제행동과 감시까지도 데이트폭력의 정의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화영, 2014). 이와 유사하게 세계보건기구(WHO; 2010)도 연인 관계 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행동통제 행위까지 포함한 모든 폭력행동을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홍영오, 2017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직접적인 상해나 피해를 미치지 않더라도 언어적 위협과 같은 심리적 폭력이나 행동통제 또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고통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체폭력이나 성적폭력뿐만 아니라 행동통제와 정서폭력 모두를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네 가지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심각성이나 폭력의 직·간접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분류한 하위유형별로 주로 나타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이나 폭력행동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데이트폭력 관련 영향요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의 한 축은 폭력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성격 특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차 이론을 기반으로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차 이론으로 폭력행동이나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은 경계선적 성격 특성, 애착유형, 충동성 등이 폭력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임을 밝혀왔다(홍영오, 2017; Cicchetti & Howes, 1991; Dardis, Dixon, Edwards, & Turchick, 2014). 실제로 한 연구는 아동기 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위협요인임을 검증하였는데, 이때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조절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조우연·김경희, 2015).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기 폭

력경험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특성 중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분노 표출 행동, 청소년 비행, 위법행동 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박현민·이병도·서우승·이창배, 2019).

데이트폭력 관련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른 한 축은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설명해왔다(김재엽·송아영, 2007; 박현민 외, 2019; 홍영오, 2017; McCloskey & Lichter, 2003). 사회학습이론은 범죄란 개인이 범죄와 관련된 행동 양식을 학습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학습은 가족이나 또래집단처럼 친밀한 관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Bandura, 1978; Sutherland, 1947).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 행동 외에도 범행의 동기나 범위반에 대한 태도 등도 함께 학습된다.

사회학습이론의 측면에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가해자들이 친밀한 집단으로부터 폭력적인 행동 양식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학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사회화 집단이 가정이기 때문에 성장기 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에의 노출은 성인기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성장기 아동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러 폭력행동 또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김예정·김득성, 1999; 김유정·서경현, 2009; 조춘범, 2012; Dardis et al., 2014). 예를 들어 한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직접적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간접적인 피해경험보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유고은·이창배, 2021), 또 다른 연구는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때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김수민·이창배, 2021).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학습’에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학습 외에도 범위반에 대한 태도나 범행 동기에 대한 학습도 포함된다.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ndura, 1978; Sutherland, 1947). 기존 연구들은 성장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폭력을 갈등의 해결이나 입장의 관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학

습하게 되고 폭력행동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폭력에 우호적이며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동기, 2009; 김예정·김득성, 1999; 김은경·엄애선, 2010; 서경현, 2009; 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이병도·조춘범, 2013).

이어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와 폭력을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습된 폭력이 데이트폭력 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수민·이창배, 2021; 김예정·김득성, 1999; 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2001; 손혜진·전귀연, 2003; 신혜섭·양혜원, 2005; 홍세은·정지수, 2019; O'Keefe, 199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폭력정당화와 데이트관계신화와 같은 폭력인식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데이트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채영·정소영·이명신, 2010). 폭력허용도가 행동통제와 신체적, 성적 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여,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김동현·박주애·곽대경, 2021).

선행연구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차 이론에서 자아존중감, 경계선적 성격 특성, 애착유형(회피애착, 불안애착)을,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에 대한 학습된 태도, 즉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를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폭력행동을 초래하는 배경적 요인인 원거리(distal) 변수보다는 폭력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리(proximal) 변수만을 고려하여, 보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잠재 프로파일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거리 변수에 해당하는 부모의 폭력 목격이나 학대 경험은 잠재 프로파일 구성 변수에서 제외한 뒤 근거리 변수에 해당하는 애착, 태도 요인 등을 활용하여 (Holtzworth-Monroe & Stuart, 1994)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 간 데이트폭력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3.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가해자 유형화 연구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드물지만, 데이트폭력과 함께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IPV)에 속하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 가해자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다수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희숙과 김예성(2004)은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 217명의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1번 유형은 아내에게만 폭력행동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평등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고, 2번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였으며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 불만족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번 유형은 신체적·정서폭력의 정도가 높고 아내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며,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으며 알코올 남용이 심한 통제력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때 3번 유형의 경우에는 여성의 성역할에 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현수 외(2004)는 수원지방법원 가정보호사건부 판사에 의해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99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를 유형화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세 개의 군집이 발견되었는데, 1번 군집은 발달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병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집증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으며,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사고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2번 군집은 우울증이나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증 척도가 높게 나타나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가정 내에서는 폭력적일 수 있으나 가정 밖에서는 오히려 수동적이고 순응적일 수 있는 유형임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3번 군집은 병리적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일반인보다 공격성에 관련된 척도에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사람들에 비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유형임을 시사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가정폭력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반 남성들과 구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일부 연구는 유형에 따라 실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김현수 외, 2004).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이 보유한 성격 및 폭력에 대한 태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출한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행동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특성 및 폭력에 대한 태도에 따른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각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즉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 폭력 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자료 및 측정

가. 연구자료

본 연구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15」 자료 중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트폭력 가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²⁾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표 1), 먼저 응답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263명(63.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 응답자는 535명(26.8%), 40대 응답자는 162명(8.1%), 50대 응답자는 40명(2.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가 1,256명(6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은 309명(15.5%), 2년제 대학 졸업은 280명(14.0%)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이성 교제 당시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797명(39.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인 경우는 472명(23.6%), 아르바이트 등의 직업을 가진 학생이었던 경우는 397명(19.9%), 휴직이나 실업 또는 정년퇴직 및 가사전담이라고 답한 경우는 168명(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19~29세	1,263	63.1
	30~39세	535	26.8
	40~49세	162	8.1
	50~59세	40	2.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0	1.0
	고등학교 졸업	309	15.5
	2년제 대학 졸업	280	14.0
	4년제 대학 졸업	1,256	62.8
	대학원 이상	135	6.8
고용상태	정규직	797	39.9
	비정규직	166	8.3
	아르바이트 학생	397	19.9
	학생	472	23.6
	휴직 등 기타	168	8.5

주. N = 2,000명

- 2)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2015」는,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조사와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가해실태’ 조사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이때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은 조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패널 약 110만 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할당추출방법을 활용해 추출되었고, 조사항목이 사적이고 민감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을 수집하였다(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특히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나. 변수의 측정³⁾

1) 잠재 프로파일 구성을 위한 변수의 측정

응답자인 성인 미혼 남성을 유사성에 따라 군집화하기 위해 개인의 성격 특성(자아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 및 폭력태도 특성(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 연인 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과 관련된 7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군집화에 사용된 변인들은 가정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하였다.

성격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4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변수를 구성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성격 특성 중 경계선 성격장애는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PAI-BOR; Morey, 1991)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와 같이 충동성을 질문하는 문항과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덕스럽다’와 같이 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23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인 편이다’, ‘내 기분은 잘 바뀌지 않는다’, ‘나는 쉽게 싫증을 느끼지는 않는다’, ‘나는 신중하게 돈을 쓴다’의 4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에서는 ‘내 기분은 매우 갑작스레 변한다’라는 문항을 두 번 질문하였기 때문에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 특성 중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성인애착유형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 ECR; Brennan, Clark, & Shaver, 1998)를 통해 함께 측정되었다. 성인애착유형 척도(ECR)는 회피와 불안애착에 대해 측정하는데, 회피애착은

3)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을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 구성개념(construct)들이 적절히 측정되었으며, 구성타당도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 뒤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막 나와 친해지려고 할 때 꺼려하는 나를 발견한다’ 등의 1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교적 쉽다’, ‘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대개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와 고민을 상의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 조언 또는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에게 의지하면 도움이 된다’, ‘나는 위로와 확신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상대방에게 의지한다’와 같은 9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1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변수화 하였다.

불안애착은 ‘나는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편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등의 1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중 ‘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해 때때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1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어서 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먼저 폭력태도 중 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는 ‘남자친구에게 뺨을 맞을 만한 여자도 있다’, ‘때때로 남자들은 여자친구에게 주먹질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등의 1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연인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때리면 헤어져야 한다’,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자친구를 밀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와 같은 4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는 역코딩 후 12개의 문항을 평균하여 변수로 구성하였다.

폭력허용도는 대인관계 내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헤어지자고 위협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논쟁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부르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가족/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우습게 만든다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밤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으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의 8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 응답들을 평균하여 폭력허용도 변인으

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태도 특성 중 연인 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는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 간에 발생한 폭력행동을 문제 삼아 대응하는 것을 꺼리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데이트 중 폭력의 대부분은 연인 중 한명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한다면, 나의 잘못이다’, ‘연인 사이에서 맞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참는 것이다’, ‘연인 간 파트너를 때리는 것은 일종의 사랑싸움으로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 ‘연인관계에서 싸우고 난 후의 성관계는 화해 또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연인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없다’와 같은 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회피애착 및 불안애착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연인 간 폭력태도, 폭력허용도, 그리고 연인 간 폭력대응과 같은 나머지 모든 변인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4점(매우 그렇다 또는 완전 동의함)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변인은 하위 문항들의 응답점수를 평균하여 산출되었으며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잠재 프로파일 구성을 위해 투입된 변수들인 자아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 연인 간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회피애착, 불안애착은 1~5점 범위 내에서 평균이 각각 3.62와 2.82, 2.65로 나타났으며, 경계선 성격장애와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는 1~4점 범위 내에서 평균이 각각 2.23, 2.09, 1.57, 1.31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해 내적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중간 수준 이상의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잠재 프로파일 분석 시에는 변수 간 척도의 범위가 다름을 고려하여, Z 표준화 값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2) 데이트폭력 관련 변수의 측정

이어서 잠재 프로파일 간 데이트폭력 행동의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변인들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연

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해를 하거나 그럴 의도가 인정되는 폭력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Straus et al., 1996; 김정란·김경신, 1999),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그리고 성적폭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유형은 임채영 외(2010), 박현민 외(2019) 등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와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다.

행동통제의 구체적 문항은 ‘옷차림을 제한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등 11문항이었고, 정서폭력은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등 7문항, 신체폭력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등 12개 문항, 그리고 성적폭력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유형을 측정한 모든 변수의 크로바흐 알파값은 0.9 이상으로 높은 일관성을 나타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도출한 종속변수, 즉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으로 나누어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표 2>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행동통제의 평균은 1.50점, 정서폭력의 평균은 1.25점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력의 평균은 1.13점, 성적폭력의 평균은 1.21점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Z 표준화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ronbach's α
성격	자이존중감	3.62	.62	1.20	5.00	0.88
	경계선 성격장애	2.23	.38	1.00	3.50	0.67
	회피애착	2.82	.43	1.39	4.61	0.78
	불안애착	2.65	.63	1.00	4.83	0.92
폭력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1.87	.49	1.00	3.75	0.78
	폭력허용도	1.31	.53	1.00	4.00	0.94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1.57	.51	1.00	4.00	0.82
데이트폭력	행동통제	1.50	.65	1.00	5.00	0.93
	정서폭력	1.25	.55	1.00	5.00	0.95
	신체폭력	1.13	.44	1.00	4.50	0.98
	성적폭력	1.21	.44	1.00	4.18	0.92

3. 분석 방법

가.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을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하나로, 잠재계층을 측정하는 변수(latent class indicator)가 이분형이 아닌 연속형일 때 연구대상의 응답 패턴에 따라 응답의 양상이 유사한 하위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Muthén & Muthén, 2017).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것은 군집분석이다. 그러나 군집분석은 분류한 하위 군집이 얼마나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인, 즉 객관적인 기준(criteria)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잠재계층분석이나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하위집단 수를 결정함에 있어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와 같은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거나 Lo-Mendell-Rubin(LMR; Lo, Mendell, & Rubin, 2001) 검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각 하위집단에 연구대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정확성을 의미하는 지수로 Entropy를 사용하는데, 이때 Entropy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하위집단 분류가 정확하다고 판단한다(Morin, Morizot, Boudrias, & Madore, 2011).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응답자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자이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과 같은 성격적 특성과,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와 같은 태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이 유사한 응답자를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위유형들을 구분하고, 실제로 유형 간 데이트폭력 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수행에는 Mplus 8.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나.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남성의 유형에 따른 각 특성의 차이와 데이트폭력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모든 종속변인에 대해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비모수적 검정인 Games-Howell 방법을 활용하였다. 데이트폭력은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그리고 성적폭력의 4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하위유형 사이에 데이트폭력의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파일 수를 변화시키며 반복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뒤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수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선정한 프로파일 수를 기반으로 자료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뒤, 각 잠재 프로파일의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각각의 잠재 프로파일이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 성인 남성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모형적합도 비교를 통한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선정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먼저 프로파일의 수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적합도가 가장 좋은 최적의 프로파일 수를 정한 뒤, 이어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유형을 명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인 남성 응답자 내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하위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몇 개의 하위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수를 1개에서 4개까지 변경하며 일련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 프로파일이 1개라고 가정한 모형보다 2개라고 가정하였을 때 Log Likelihood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AIC, BIC와 SABIC 값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R LR, ALMR LR, BLRT와 같은 LR 검정 결과들에서도 잠재 프로파일이 1개인 경우에 비해 2개인 경우에 모형의 향상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내에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잠재적인 하위유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잠재 프로파일을 3개라고 가정한 경우, 2개로 가정한 경우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라고 가정한 경우에도 3개라고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모든 모형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으며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적합도는 높아졌으나 LR 검정값의 유의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개~5개의 잠재 프로파일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뒤, LR 검정값의 유의도와 이론적인 설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4개의 잠재 프로파일에 대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⁴⁾ 이때 Entropy 값은 0.846으로 나타나 분류의 질이 좋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잠재 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프로파일 수	Log 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 p 값	ALMR LR p 값	BLRT p 값
1	-19861.64	39751.28	39829.69	39785.21	—	—	—	—
2	-18070.78	36185.55	36308.77	36238.88	0.985	<0.001	<0.001	<0.001
3	-17465.95	34991.90	35159.93	35064.61	0.824	<0.001	<0.001	<0.001
4	-17147.72	34371.43	34584.27	34463.54	0.846	.0012	.0013	<0.001
5	-16970.21	34032.42	34290.06	34143.92	0.865	.0288	.0301	<0.001

4) 이때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증가시키면 하나의 집단이 3%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며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이 여러 개로 구성되는 등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4개로 확정한 후, 도출된 각각의 잠재 프로파일에 속한 응답자의 수와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응답자가 1번부터 4번까지의 잠재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각각 산출하고, 이 과정을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였다. 그런 후에 각 응답자를 소속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 프로파일로 배정하였다. 그렇게 응답자를 각 잠재 프로파일에 할당한 결과는 아래 <표 4>의 프로파일별 응답자 수와 비율(%)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렇게 각 잠재 프로파일에 소속된 응답자들이 보유한 각 잠재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평균한 값을 <표 4>의 왼쪽에 제시하였다. 이때 행으로 제시된 1~4는 각 응답자가 실제로 배정된 잠재 프로파일의 번호를 의미하며, 열로 제시된 1~4는 산출된 각 잠재 프로파일의 소속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각선 왼쪽 가장 위에 있는 0.885는, 1번 잠재 프로파일로 배정된 응답자들의 1번 잠재 프로파일의 소속 확률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 잠재 프로파일별 소속 확률 평균

잠재 프로파일	1	2	3	4	프로파일별 응답자 수	프로파일별 응답자 비율(%)
1	0.885	0.112	0.002	0.000	659	33.0
2	0.087	0.908	0.004	0.000	962	48.1
3	0.010	0.035	0.931	0.024	204	10.2
4	0.000	0.000	0.037	0.963	175	8.8

주. 잠재 프로파일별 응답자의 수와 비율은 응답자 개개인이 각 잠재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산출한 뒤 가장 높은 소속 확률을 가지는 잠재 프로파일에 배정한 결과임

2.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4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특징을 7가지 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표 5). 첫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경계선 성격 특성이 낮으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보이지 않고 연인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낮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며, 폭력 허용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은 개인 성격 특성과 폭력태도가 전반적으로 모두 안정적인임을 고려하여 ‘관계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경계선 성격의 특성이 나타나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보이나,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보통이고 폭력에 반대하여 대응하고자 하며, 폭력허용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폭력태도를 갖고 있으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허용도가 전반적으로 폭력행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폭력억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앞서 살펴본 폭력억제형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경계선 성격 특성, 그리고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일부 나타내고 있으나, 폭력억제형과는 달리 폭력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고 폭력허용도가 매우 높으며,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사용을 꺼리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잠재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폭력에 허용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폭력관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고 경계선 성격의 특성을 높게 나타내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고 관계 내에서 폭력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으며 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높고 폭력허용도 또한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과 폭력태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력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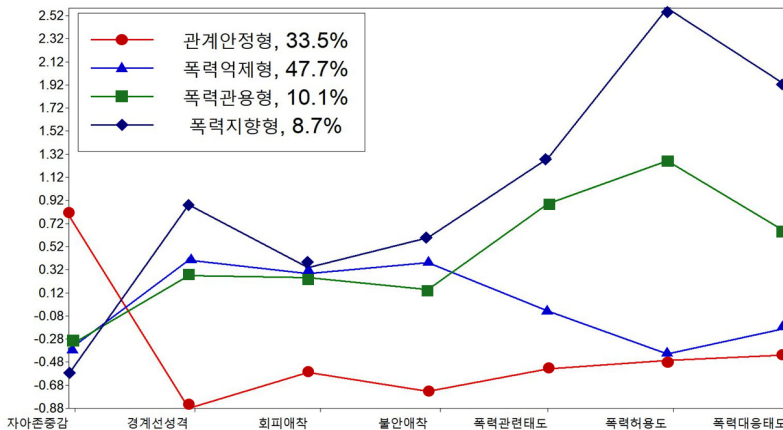
〈표 5〉 잠재 프로파일별 응답 특성

변수	잠재 프로파일			
	1: 관계안정형 (N=659, 33.0%)	2: 폭력억제형 (N=962, 48.1%)	3: 폭력관용형 (N=204, 10.2%)	4: 폭력지향형 (N=175, 8.8%)
자아존중감	0.791	-0.376	-0.342	-0.585
경계선 성격장애	-0.882	0.402	0.267	0.880
회피애착	-0.572	0.286	0.251	0.338
불안애착	-0.737	0.378	0.145	0.594
폭력에 대한 태도	-0.542	-0.041	0.891	1.281
폭력허용도	-0.466	-0.409	1.263	2.583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	-0.419	-0.188	0.637	1.910

이어서 4개의 잠재 프로파일별로 각각의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대해 추정된 (estimated) 확률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그래프의 x축은 자아존중감, 경계선 성격장애, 회피애착, 불안애착,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허용도, 폭력대응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며, y축은 각 잠재 프로파일이 (평균인 0과 비교하여) 해당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확률을 나타낸다.⁵⁾

<그림 1>에서 관계안정형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경계선성격, 회피애착, 불안애착, 그리고 폭력태도 모두가 낮아, 관계 측면에서 매우 좋은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폭력억제형과 폭력관용형은 모두 자아존중감이 낮고 경계선 성격 특성과 회피애착, 불안애착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폭력억제형의 경우에는 폭력에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가 낮게 나타나며 폭력관용형은 폭력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폭력지향형은 폭력에 관한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관계안정형과 폭력지향형은 서로 양극단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 프로파일임을 확인하였으며, 폭력억제형과 폭력관용형은 성격 특성은 유사하나 폭력태도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잠재 프로파일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 각 잠재 프로파일의 응답 특성



5) 이때 그래프는 분석을 통해 추정한 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소속 응답자 수와 비율로 그려졌기 때문에 실제 표본으로 도출된 응답자 수 및 비율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3. 잠재 프로파일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

위와 같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인 남성의 하위유형에 따라 데이트폭력, 즉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그리고 성적폭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동통제($F=418.95$), 정서폭력($F=390.12$), 신체폭력($F=281.10$), 그리고 성적폭력($F=134.65$) 등 모든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해서 남성의 하위유형 간 폭력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통해 하위유형별 데이트폭력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하위유형에 따른 행동통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통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폭력의 경우에도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폭력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신체폭력과 성적폭력의 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행동통제 및 정서폭력과 유사하게 폭력지향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보였고,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종류의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폭력지향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나타내며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 분석결과는 성인 미혼 남성의 하위유형별로 데이트폭력 행동의 심각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중 어떤 종류의 데이트폭력을 가하는지는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⁶⁾

6) 본 연구에서는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성별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고 Bonferroni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데이트폭력 가해유형에 대해서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났고, 일원분산분석과 동일하게 폭력지향형,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높은 폭력행동을 보고하였다. 다만 정서폭력과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관계안정형과 폭력억제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하위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차이

	하위유형	평균	SD	F	사후검정
행동통제	관계안정형(a)	-.37	.56	418.95***	d>c>b>a
	폭력억제형(b)	-.187	.68		
	폭력관용형(c)	.48	1.14		
	폭력지향형(d)	1.86	1.33		
정서폭력	관계안정형(a)	-.32	.36	390.12***	d>c>b>a
	폭력억제형(b)	-.21	.51		
	폭력관용형(c)	.47	1.26		
	폭력지향형(d)	1.83	1.85		
신체폭력	관계안정형(a)	-.25	.11	281.10***	d>c>b>a
	폭력억제형(b)	-.21	.24		
	폭력관용형(c)	.38	1.33		
	폭력지향형(d)	1.65	2.38		
성적폭력	관계안정형(a)	-.26	.44	134.65***	d>c>b>a
	폭력억제형(b)	-.12	.60		
	폭력관용형(c)	.45	1.43		
	폭력지향형(d)	1.15	2.11		

주. *** $p < .001$

실제로 분석결과에서 폭력지향형이 모든 종류의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해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낮은 자이존중감, 경계선 성격 특성, 회피 및 불안애착 등의 성격 특성과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특성들을 많이 보유한 남성일수록 많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보임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폭력억제형은 폭력관용형과 유사한 성격 특성을 지녔음에도 폭력관용형보다는 확실하게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폭력억제형에 속한 남성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을 보유하였음에도,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 또한 낮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격 특성이 데이트폭력이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폭력억제형의 경우 관계안정형과 비교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표 6>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관계안정형과 폭력억제형은 모든 폭력 가해유형에 대해서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의 폭력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관용형과 폭력지향형의 데이트폭력 행동은 평균을 크게 넘어서는 심각도를 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 특성보다는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및 허용적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높은지, 상대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는지, 폭력행동을 허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까지 이어지도록 하거나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추론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미혼 남성을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등,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가해행동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성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응답자인 성인 남성들은 관계안정형, 폭력억제형, 폭력관용형, 폭력지향형과 같은 4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유형은 서로 다른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을 보였다. 먼저 관계안정형은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들이 모두 안정적인 유형이었으며, 폭력억제형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들을 갖고 있으나 폭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 즉 폭력행동을 억제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관용형은 관계에 부정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폭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유형이었으며, 폭력지향형은 폭력

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허용 정도를 보이는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각 하위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데이트폭력 종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폭력지향형이 행동통제, 정서폭력, 신체폭력, 성적폭력 등 모든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폭력관용형, 폭력억제형, 관계안정형 순으로 나타나 개인의 성격 특성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단편적인 특성을 통해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기보다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 개인이 보유한 여러 가지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의 분포 양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stable)인 특성을 가지는 유형들을 도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에서 폭력억제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폭력관용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 비교한 경우에도 큰 차이로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행동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억제형의 경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낮은 자존감, 높은 경계선적 성격, 높은 불안 및 회피애착 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폭력태도의 수준에 따른 폭력행동의 차이는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방증하며, 데이트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 남성 전체를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뒤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각 하위유형 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심각성이 실제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과 그런 경험이 없는 남성들 사이의 특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데 성격 특성 또는 폭력태도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의 차이가 결국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우호적이고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데이트폭

력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관련 이론들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차보다는 학습된 폭력에 대한 태도가 실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같은 예방 및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조치의 일환으로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인지 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 연구는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혼 남성을 제외하고 미혼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노년층에서도 중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⁷⁾ 60세 이상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또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이 결혼 이후 가정폭력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Shorey, 2008),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데이트폭력이 청장년층에만 한정된 폭력 범죄가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성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고 60세 미만 미혼 남성의 표본만을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만약 여성이나 기혼 남성, 그리고 노년층까지 포함한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의한 하위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성격 특성과 폭력태도 특성만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데이트폭력 관련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특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특성들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

7) 배주현. “황혼 데이트 폭력 급증… 젊은이보다 더 위험하다”. 『매일신문』, 2021. 12. 20.

적인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 유형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변인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유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중단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혜영. (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 허용성 영향요인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 37-68.
-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6), 135-159.
- 김수민·이창배. (2021).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경찰학회보, 86, 195-226.
- 김예정·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유정·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은경·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김재엽·송아영.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 김정란·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김현수·신윤미·조선미·정영기·임기영. (2004).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의 유형화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43(4), 461-469.
- 박현민·이병도·서우승·이창배. (2019). 아동기 직·간접적 폭력 경험이 성인 미혼 남성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77, 71-107.
- 배주현. “황혼 데이트 폭력 급증… 젊은이보다 더 위험하다”. 『매일신문』. 2021. 12. 20.
-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김봉진·정구철·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 2, 75-98.

- 손혜진·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43-63.
- 신혜섭·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 299-32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9. 2.).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오윤희·임성문.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데이트폭력 가해동기: 성차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8(1), 49-77.
- 유고은·이창배. (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큐리티 연구*, 66, 291-318.
- 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병도·조춘범. (2013). 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71-93.
- 이숙정·권호인. (2021).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 (API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391-410.
- 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채영·정소영·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장희숙·김예성. (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6(3), 303-325.
- 조우연·김경희. (2015).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9, 71-96.
- 조춘범. (2012). 청소년의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성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음란물 접촉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2, 145-172.
- 홍세은·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 홍영오 (2017). 성인의 테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91.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In: Parzen E., Tanabe K., Kitagawa G. (eds) *Selected Papers of Hirotugu Akaike. Springer Series in Statistics (Perspectives in Statistics)*. New York: Springer, doi.org/10.1007/978-1-4612-1694-0_29.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1), 87-100.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Simpson A, Roholes WA, editor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Cicchetti, D., & Howes, P. W. (199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child maltreatment.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3(3), 257-281.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 Elbow, M. (1977).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violent marriages. *Social Casework*, 58(9), 515-526.
- Faulk, M. (1974). Men who assault their wive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14(3), 180-183.
- Gondolf, E. W. (1988). Who are those guys?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3(3), 187-203.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86).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abuse their partners: A cross-validation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 323-341.
- Hamberger, L. K., Lohr, J. M., Bonge, D., & Tolin, D. F. (1996). A large sample empirical typology of male spouse abusers and its relationship to dimensions of abuse. *Violence and Victims*, 11(4), 277-292.
- Holtzworth-Munroe, A., & Stuart, G. L.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76-497.
- Jacobson, N. S., & Gottman, J. M. (1998). *When men batter women: New insights into ending abusive relationships*. Simon and Schuster.
- Lloyd, S. A., Koval, J. E., & Cate, R. M.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was presented at the 1988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raeger Publishers.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doi.org/10.1093/biomet/88.3.767.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97-102.
- McCloskey, L. A., & Lichter, E. L.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t aggression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390-412.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orin, A. J., Morizot, J., Boudrias, J. S., & Madore, I. (2011). A multifoci person-centered perspective on workplace affective commitment: A latent

- profile/factor mixture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4(1), 58-90.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7). *Mplus. The Comprehensive Model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User's Guide* (8th ed.), LA: Muthén & Muthén.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Saunders, D. G. (1992).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2), 264-275.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doi.org/10.1214/aos/1176344136.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3), 185-194.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Violen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2), 1034-1048.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Oxford, England: J. B. Lippincott.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Typologies of Male Adults based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and the Differences in Dating Violence: A Latent Profile Analysis

Hong, Seeun*·Han, Min Kyung**

Using the data on Dating Violence Survey 2015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adult single males based 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and examines whether the level of dating violence varies over latent groups in the observed data. As a result, four latent types were identified - stable relationship, violence-suppressed, violence-tolerant, and violence-oriented type. The stable relationship type shows posi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ent behavior; the violence-suppressed type show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t negatively affected relationships but not friendly to violence; the violence-tolerant type has simila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o the violence-suppressed type, while it shows relatively tolerant toward violence; and lastly, the violence-oriented type shows much more permissive on violence than the violence-tolerant type.

The one-way ANOVA is then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ating violence among latent groups: The violence-oriented type shows the highest level in all aspects of behavioral control,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e result that the violence-suppressed type shows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dating violence than the violence-tolerant type suggests that an unpermissive attitude toward violence may moderate the expression of dating viol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for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or

*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Police Studies,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reatment program to establish a correct attitude on violence.

❖ Key words: dating violence, typolog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 violence, latent profile analysis

아동학대에 대한 젠더 분석: 남성성, 돌봄, 재생산권

추 지 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2020년 한해동안 사망에 이른 22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적 젠더 연구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남성됨의 자원으로 삼는 실천이 아동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사이의 구체적 메커니즘, 가족 중심 복지체계의 특성이 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 부담감이나 우울로 환원할 수 없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다양한 생애 경험이 엄마됨에 대한 인식과 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젠더 관점의 복지, 의료, 교정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젠더는 계층, 장애 등과 교차하면서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위치와 취약성, 나아가 성과 재생산 권리 실행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며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있다. 아동 보호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방식을 문제 삼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 인식을 통해 아동학대를 바라볼 것이 요청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33>.

❖ 주제어 : 아동학대, 자녀살해, 아내학대, 돌봄, 남성성, 페미니스트 범죄학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I. 서론

1. 문제제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래, 예방과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법 개정도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한 개인이 아동의 보호자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을 살피고, 그것이 어떻게 학대를 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부족하다. 뇌출혈, 혼수상태, 췌장 파열 등의 어휘와 명든 몸 사진이 환기하는 아동학대의 이미지는 아동을 건강하게 돌볼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나쁜 보호자의 문제로 아동학대를 바라보기 충분하게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좋은 엄마’와 이를 방기하는 ‘나쁜 엄마’라는 이분법 역시 이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계모, 양모, 동거녀, 양외할머니 등 아동학대의 가해자를 지시하는 어휘들만큼이나 아이를 돌봐야 할 책임이 여성에게 우선되어 있는 현실은 정작 아동학대의 예방책 마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또 다른 엄마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팅과 SNS를 통한 탄원서 수집, 모성애의 국경 없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 한해동안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의 사례 중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전체의 44.5%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0 : 26). 가해자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여성들이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가해자됨을 강조하는 아동학대 담론의 한계를 비평하는 것을 넘어 남성 혹은 여성이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젠더는 단순한 성별 범주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로서 사회 구성 원리의 하나다. 이것은 한 개인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특정한 성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 아동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실천, 부모로서 자신의 정체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 작동하고 있다. 아동의 삶이 이와 같은 젠더 관계의 산물이라면, 아동학대 분석에 있어 ‘보호자’의 위치와 경험을 젠더 관점에서 읽어 내는 것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젠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미진하다. 젠더 중립적으로 보이는 아동 정책에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진 것도 2019년,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이래 꾸준히 확장된 아동학대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빈곤 등을 주된 설명 변수로 삼아 발전해왔고 오늘날에는 종합적 이론화를 피하고 있지만(안성경 외, 2012; 이상균 외, 2017), 각각의 변수나 메커니즘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페미니스트 연구는 고전문학에서부터 오늘날의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자녀, 가족, 지역사회, 심지어 자신까지 파괴하는 ‘나쁜 엄마’에 대한 표상 분석을 해왔지만,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아동학대 발생 과정에 대한 분석적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30여년 전, 애쉬와 캔은 ‘나쁜 엄마’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페미니즘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젠더화 된 질서의 피해자 혹은 자율적인 권리 주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성들의 삶을 맥락화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내놓는 것이 젠더 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의 과제임을 주장한 바 있다(Ashe & Cahn, 1993). 2006년, 「페미니스트 범죄학(Feminist Criminology)」의 창간호에서도 치즈니린트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 없이 거시적 젠더 관계의 불평등을 논의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형사사법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도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범죄 현상을 통해 페미니즘의 의제와 논의 프레임을 확장하기 위해 피해자로 국한되지 않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페미니즘의 연구 관행을 벗어나길 요청했다(Chesney-Lind, 2006). 2009년, 정혜숙은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에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촉구하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젠더 쟁점을 제시한 바 있다(정혜숙, 2009).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적 젠더 연구가 정교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에 대한 판결문 정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구체적 쟁점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적 분석을 진행했다. 2020년 기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0.19%에 그치며(보건복지부, 2020 : 70) 이를 아동학대의 전형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모든 아동학대의 양상과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는 선행 연구와 자료가 불충분한 점, 오늘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바로 이러한 형태에 집중되면서 젠더를

비슷한 구조적 진단이 지연되고 있는 점, 그 현안을 재료를 삼아 변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Chesney-Lind, 2006)로 검토 대상을 설정했다.

2. 이론적 배경: 모성과 여성-복지-형벌의 관계

아동학대는 부모는 물론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이나 보육 및 교육 담당 대리양육자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다. 그 중 가해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부모¹⁾이며 아동학대 관련 페미니스트 논의 역시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많은 연구들은 모성을 자연화하고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형벌 혹은 복지라는 이름의 제재를 통해 재생산되는 상황이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진단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엄마의 책임과 ‘보호 실패’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면서 정책의 수립 과정에 남성의 역할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되었음이 지적된다(Lister, 2006). 미국 클린턴 정부의 부양아동지원제도 폐기 과정 역시 유사하게 평가된다.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이 빈곤으로 인해 성판매, 마약소지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자 보수적 가족 규범을 지지하는 관료와 전문가들이 이들에 대한 감시망, 여성에 대한 처벌 확대를 요구하며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했다는 것이다(Gordon, 1994; Gelthorpe, 2010). 여기에는 여성 단독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동원되기도 했는데,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한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지수급자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더욱 쉽게 포착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Widom & Osborn, 2021; MacDaniel & Slack, 2005).

겔스토프는 여성들의 복지 수급 자격에 대한 의심, 이에 터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집중된 감시 등 가족주의 형사사법이 빈곤 여성들을 통제하는 방식, 즉 ‘여성 가난의 범죄화’는 여성이 속해야 할 위치가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새로운 현상도 아니라 주장한다(Gelsthorpe, 2010). 또한 리사 마허는 1990년대 미

1) 2020년 기준 그 비율은 82.1%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20:64).

국의 “마약과의 전쟁” 당시 크랙을 흡입하는 임신부 및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기획을 사례로 들면서, 가난한 유색 인종 여성들의 몸에 대한 규제는 형사 기소보다는 아이의 타가정 위탁, 복지 급여 및 공공 주택 지원 자격 박탈 등 복지 절차상 제재를 통해 더욱 빈번히 이뤄져왔음을 주장했다. 이때 형사사법은 그러한 접근의 정당성을 둘러싼 담론 지형을 형성하는 힘을 발휘하되 정작 여성들이 약물 중독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없는 남성 중심의 치료모델을 이어갔다고 지적한다(Maher, 1992). 웨스트와 리히텐스테인은 형사정책과 복지정책의 위와 같은 기능적 보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2001년, 5명의 자녀를 육조에 익사시킨 후 산후정신증에 의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고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안드레아 예이츠 사건을 분석한다. 그녀가 앓았던 산후정신증이 아이들을 ‘위해’ 그들을 살해해야한다는 망상까지 만들어내는 이상적 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 자녀 돌봄 과정에서의 사회적 고립, 아이 아버지의 지원 부재 등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은 물론, 아픈 아버지와 아이들을 혼자 돌보아야 했던 파트너, 딸, 엄마로서 예이츠의 복합적 경험은 온전히 공론화 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나아가 그녀가 자신의 살해 행위가 갖는 의미를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신이상 항변(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을 통해 무죄를 호소해야 했던 상황에도 주목한다. 그녀에게 형벌 혹은 무기한의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결과일지를 되물으면서, 여성들은 수감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법 권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의료적 치료와 규제, 사회적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배치 속에서 유순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음을 주장한다(West & Lichtenstein, 2006). 이는 처벌의 개념을 형사법적 규제를 넘어 폭넓은 사회통제의 기제로 확장해 사유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주된 논거이기도 하다(Fox, 2000; Maher, 1993).

이와 같은 복지와 형벌간의 관계에 대한 영미권의 논의를 2000년대 중반 이래 보육 관련 정책과 예산이 확대되어 온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형벌 및 복지 정책이 엄마노릇(mothering)과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속되고 있다. 추지현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 처벌 강화의 움직임을 추동한 강력한 아동 보호 담론은 아동의 1차적 보호 주체를 엄마로 호명하고 아동 안전과 돌봄의 책임을 개인화하는 통치 기제의 일부였음을 주장한다(추지현, 2014). 김수정·황정미(2019)는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대응을 사례로, 영유아 돌봄에 대한 ‘공공성’이 부모의 양

육비 경감이나 국가의 비용지원을 통한 민간시설 이용 확대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간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 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거나 돌봄 노동자들의 적정 처우를 제도화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열악한 돌봄 노동의 조건이 가족을 넘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문제화 하는데도 고려되어야 할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할 것은 모성 이데올로기와 돌봄의 분배 방식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이 모성을 거부하는 대상 혹은 여성 억압의 기제로만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성적 실천이 인간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취약성과 의존성을 특성으로 하는 모든 인간에게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성별분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그간 가치절하 되어 온 돌봄을 사회 정의의 원천으로 구성하기 위한 논의로 확장되었다(Tronto, 2013; Kittay, 2019). 특히 키테이는 1차적 돌봄 단계에서 의존인의 돌봄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은 불가피한 것인데 반해,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돌봄제공자의 의존성, 즉 돌봄 제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심화는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것임을 분명히한다. 그래서 양자 관계의 쌍무적 호혜성을 넘어서 제3자의 돌봄 의무, ‘함께 돌봄(caring with)’의 연대성 실현을 요청한다(Kittay,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안녕은 그저 ‘보호자’ 개인의 책임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보호자’를 사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한 키테이의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모성 실천의 ‘차이’에 대한 사유 요청이다. 예컨대 그 실천의 일부인 성장의 증진에 있어 중증장애아에게는 비장애아와는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엄마의 사랑과 관심 역시 하루도 빠지지 않는 평생의 가담을 수반할 수 있다. 가용 자원의 부재로 온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비장애아조차도 성장이나 사회화를 기대하기 힘들다(Kittay, 2019).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동은 물론 장애인, 환자, 노인과 같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돌봄의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 그것들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지속되고 있다(김영옥 외, 2020).

- 2) 그녀는 러딕이 아이를 기르는 모성 실천의 필요 요건으로서 언급한 생명 보존을 위한 사랑, 성장의 증진, 사회화의 준비 등 세 가지를 돌봄 제공자의 의존 노동 전반의 특성으로 확장하되, 이를 통해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관계들을 포착하기 위해 그것들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여성의 몸을 둘러싼 형벌 및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앞서의 논의는 아동을 돌볼 책임이 부여된 ‘보호자’로서 여성의 위치가 엄마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자, 임노동자, 나아가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기도 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또한 페미니즘의 돌봄에 대한 관점은 아동을 넘어 그 ‘보호자’에 대한 돌봄이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게 만든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들의 다층적 위치, 피돌봄자에 대한 돌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젠더의 작동 방식을 포착하고 관련한 선행 연구와 쟁점을 살펴본다.

II. 연구 자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서 정한 ‘아동학대관련범죄’³⁾, 그 중에서도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다. ‘보호자’의 상황과 아동학대 발생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된 판결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고가 이뤄진 사건 중, 관련법령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인 경우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그리고 살인, 살해, 형법 제250조~제255조가 함께 등장한 것들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적 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개연성 있는 설명으로 간주했다. 총 22건이 수집되었고 사건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⁴⁾

이 중 피고인이 아동과 사실상의 가족관계(사실혼 포함) 밖에 있었던 경우는 사례16, 1건에 불과했고 보육, 교육, 보호기관 종사자에 의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따라서 이하의 아동학대 대다수는 ‘자녀살해’^{filicide}로 명명되는 가족 내 아동학대 사안이다.⁵⁾ 이 21건 중 학대 행위자가 엄마 단독인 경우는 11건, 아버지 단독인 경우는 7건, 부모가 함께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4) 해당 자료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https://www.scourt.go.kr>)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통해 수집했다. 해당 기간 중 선고가 이뤄졌으나 다른 심급의 판결문이 그 기간을 벗어나 존재하는 경우에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파악하기 위해 포함했다(사건번호는 1심 기준으로 <표 1>에 제시함). 2021년 11월 1일 현재 2020년 재판이 진행되었던 “양천 정인이 사건”은 열람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상태다.

5)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중 96.2%는 부모나 그들의 동거인이었다(보건복지부, 2020:78).

학대한 경우는 3건이었다. 그리고 1세 미만의 영아가 사망한 경우infanticide는 7건, 분만 직후에 사망한 경우neonaticide는 3건, 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3건이다. Ⅲ장 이하에서 살펴볼 내용을 선취하여 그 쟁점을 <표 1>에 제시했다. 크게는 ① 파트너인 여성과 그 자녀를 지배, 통제하려는 실천으로서 남성성(젠더폭력, 자녀 살해 후 자살, 훈육 방식), ② ‘보호자’로서 여성의 역량을 제약하는 과거 생애 경험(젠더폭력, 피돌봄부재, 우울 요인), ③ 양육의 보다 직접적, 현재적 조건이 되는 임신 및 출산 과정(재생산권)과 돌봄노동의 부담 등 세가지다.

<표 1> 참조 사건 판결문 정보

연번	사건번호 (1심기준)	죄명	피고인	피해자	쟁점
1	대전 서산지원 2019고합105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모	딸(2세)	돌봄노동
2	제주지법 2019고합33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계)모	아들(5세)	돌봄노동
3	창원 진주지원 2019고합120	1	부	아들(3개월)	남성성(훈육), 돌봄노동
4	인천지법 2019고합898	1	모, 모의 친구, 모의 동거남	딸(3세)	피돌봄부재, 남성성(훈육), 재생산권
5	창원 통영지원 2020고합8	1	모	딸(199일)	피돌봄부재, 재생산권
6	대구 서부지원 2019고합250	1	부	아들(3세)	남성성(훈육)
7	수원 여주지원 2020고합9	1 + 아동복지법위반 (상습아동학대)	(계)모	아들(8세, 지적장애 3급)	돌봄노동
8	의정부지법 2019고합310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모, 부	딸(3개월)	피돌봄부재
9	대전지법 2020고합30	1	부	아들(2개월)	남성성(훈육)
10	서울서부지법 2020고합42	1	부	자녀(82일)	남성성(훈육)
11	인천지법 2020고합65	1	모	아들(5세)	젠더폭력, 돌봄노동
12	창원지법 2019고합226	1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부	딸(15개월)	남성성(젠더폭력)
13	수원지법 2020고합419	1	부	딸(5세)	남성성(훈육)

연번	사건번호 (1심기준)	죄명	피고인	피해자	쟁점
14	광주지법 2020고합335	1	모 (20대초)	아들(22개월, 중증 장애)	피돌봄부재, 돌봄노동
15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25	살인	부	아들(3세)	남성성(살해후자살)
16	수원 안산지원 2019고합80	살인, 폭행	모의 교제남	아들(2세)	남성성(젠더폭력)
17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2	살인	모 (40세)	아들(3세)	우울
18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65	살인	모	딸(9세, 자폐성발달 장애2급)	우울, 돌봄노동
19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14	살인, 살인미수, 자살 방조	모	딸(10세), 아들(6세)	우울, 돌봄노동
20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354	영아살해	모 (20대초)	딸(0세)	재생산권
21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740	영아살해, 사체유기	모, 부	미상(0세)	재생산권
22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314	영아살해, 사체유기	모	미상(0세)	재생산권, 피돌봄부재

1=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Ⅲ. 젠더 폭력과 남성성

1.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동시발생

아동학대 재현의 한계는 계모에 대한 편견 심화, 피해 아동의 고통과 개인 정보를 염두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남성의 부재다(Lister, 2006; Stark & Flitcraft, 1988). 이는 여성에게만 아동 돌봄의 책임을 묻게 만드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파트너 사이의 젠더 관계가 어떻게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비가시화한다. 이와 관련한 가장 오랜 연구의 쟁점은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의 동시 발생이다(Semaan et al., 2013; Lapierre & Côté, 2016; 김기현 외, 2018; 이인선 외, 2017). 오늘날에는 이 현상 자체의 실증을 넘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확장되고 있는 바, 아내학대 피해로 인한 여성의 분노와 상

실감이 자녀에게 전이된다거나(장희선 외, 2016; 이상균 외, 2017),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자녀 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재경·박명숙, 2014)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피학대 아동의 어머니인 여성이 남편 혹은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세 사례는 이와 같은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례12, 16은 아동 학대 가해자가 모두 남성이었고 이들의 아동학대 과정에 파트너인 여성이 가담한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여성이었던 사례11 역시 자신의 피해를 자녀에게 귀책시키거나 직접 학대에 나서지 않았다.

사례12의 피고인은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재결합을 요구하며 15개월된 딸을 데리고 왔지만 돌보지 않았다. 딸이 침대에서 자다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뼈 골절, 급성경막하 출혈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가 양육 의지 없이 딸을 데리고 온 것은 아내의 귀가를 의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16의 피고인은 교제중인 여성의 세 살된 아들을 살해했다. 아들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아이에 대한 위협을 반복하다 이에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 감금하고 아이를 약취, 살해했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전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이성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한데 따른 무력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대한 불안이 여성과 아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많은 연구들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모두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통제와 지배하에 두려는 남성성의 결과라는 점에서 동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해왔다(Adinkrah, 2001; Wilczynski, 1995). 남성성은 그저 생물학적 남성의 보편적 행태나 성역할 규범 수행을 지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조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남성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는 실천을 지칭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신의 남성됨을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설명은 젠더 폭력을 넘어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젠더 수행 그 자체로 설명하려는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Miller, 2014; Messerschmidt and Tomsen, 2018).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 예컨대 자신의 남성됨에 대한 확인과 인정 욕구가 큰 이들, 이를 실행할 다른 제도적 수단이 없는 남성들이 자녀와 아내에 대한 폭력을 동시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들 역시 개선되어 왔다(Bennett & Williams, 2003; Tajima, 2004).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공유 기반에 대한 설명을 넘어선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의 젠더 폭력에서 흔히 포착되듯, 남성의 폭력은 여성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 즉 부모나 동생, 물건,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과 손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Collins et al., 2018). 그리고 아동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갖는 사랑과 애착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아동은 여성을 자신에게 종속시킬 효과적인 ‘인질’ 혹은 ‘미끼’ 중 하나였다(박언주, 2014). 사례12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것은 아내학대 가해자의 폭력에 저항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대응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이성애 파트너에 의한 피학대 상황에서 그와 같이 대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례11의 피고인은 전 남편의 지속적 폭력으로 인해 그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를 데리고 현재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두 아이를 학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되거나 1년간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제한 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그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다섯살 된 첫째 아이는 사망했다. 법원은 남편이 아이들의 목을 조르고, 벌을 세운 후 발로 차거나 목검으로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의 요구에 따라 목검을 내어주거나 “소극적으로 만류”하는데 그친 책임을 그녀에게 물었다. 1심 법원은 그녀가 새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그의 폭력과 아동학대를 “감내”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의 초기 행태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직접 신고까지 했던 그녀가 다시 그와 함께 살게 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그의 “폭력적 성향”,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라 본 것이다. 그녀의 행위는 그저 무력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화’를 돌우지 않고 아이에 대한 폭력을 속히 중단시키려는 방편이었을 수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주류 논의와 같이 자신의 피학대 상황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을 아이에게 전가하거나 결국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스트레스를 분출(장희선 외, 2016; 이재정·박명숙, 2014)하여 학대에 동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친밀한 관계의 젠더 동학이 어떻게 자녀에 대한 특정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동시 발생이라는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과제를 남긴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여성의 피학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 사례의 남성은 평소의 아내학대가 인정되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아내학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입 프로그램 역시 아동학대의 예방은 물론 ‘보호자’인 여성의 상황 개선, 남성중심적 가족 질서의 변화에도 실패할 수 있다(정혜숙, 2009; Gordon, 2002). 둘째, 아내학대의 목격 자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과제다. 아내폭력의 목격 자체가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해악과 함께 그것을 아동학대로 포착해야한다는 주장이 국내외 등장하고 있지만(이세원, 2020), 이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사례 역시 없었다.

2. 아버지다움과 자녀 살해 후 자살

남성성은 아내학대와외의 중복발생 이외에도 아동학대의 다양한 쟁점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22건 중 사례15, 17, 18, 19 등 4건의 피고인은 자녀와 함께 죽음을 시도했으나 홀로 살아남은 이들이다. 과거 “자녀 동반 자살”로 명명되던 이러한 행위는 자녀가 죽음의 의미를 온전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 가능성을 사소화 한다는 논의와 함께 오늘날 “자녀살해 후 자살”로 명명되고 있다. 법원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을 “가부장제의 산물”이라 지칭하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부장제”는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사례15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례의 피고인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도 자신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심화되었던 여성들이다. 사례17은 결혼 직후 아들을 출산했으나 빈곤, 남편의 외도와 우울증으로 결혼 2년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를 먹고 아이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아들은 사망했고 그녀는 실질적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3일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인지기능 장애로 당시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18, 19 피고인의 범행 과정 역시 이와 같다.

자녀살해의 일반적 행위 패턴과 동기의 성차_{sex}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그 과정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남성들의 자녀 살해는 앞서 1절의 사례12, 16 피고인과 같이 아내에 대한 보복이나 질투 등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에 대한 폭력을 본인의 권한에

따른 적절한 훈육이라 생각하는 만큼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단적 폭력 행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이 그 특성으로 보고되어 왔다. 반면 여성의 자녀살해(maternal filicide)는 스스로의 엄마노릇이 부적절하다는 자기 비난과 죄책감,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한 ‘나쁜 양육’으로부터 자녀를 해방시키기 위한 이타적 목적이 주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Adinkrah, 2001; Stanton et al., 2000; Wilczynski, 1995). 자녀와 함께 죽음을 택하는 과정에 남성성, 모성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등장한 사례를 분석한 국내의 한 연구 역시 이를 지지한다(이현정, 2012).

사례15의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 후 3세 아들을 키우다 양육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자 자살을 마음먹고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다. 하지만 그는 전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자신이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한다며 데려왔고 실제 아이 양육은 그의 부모가 도맡았다. 자신 역시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결국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나머지 세 사례와 달리 죽음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별도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 밖에도 22개 사례 중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방임과 같은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목조름, 가격, 집어 던짐 등 적극적인 폭력 행사가 수반된 것은 모두 피고인이 남성인 사례(3, 9, 6, 10, 13, 15, 16), 혹은 남성과 함께 이 과정에 여성이 공범으로 참여한 사례4였다. 예컨대 세 아이의 아버지인 사례6의 피고인은 5세 아들이 3세 아들과 싸운 것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큰 아들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했다. 그 역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훈육의 일환으로 이야기 했다. 사례13의 아버지 역시 5세된 딸의 식사태도가 좋지 않다고 방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하고 다음날에도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저항을 제압해 사망케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오늘날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의 전형에 더욱 가깝다.

폭력적 훈육을 당연한 행위로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피학대 경험 등 생애 부정적 자극으로 인해 야기된 긴장은 폭력으로 외화되기도 하며 이는 남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Fronimos & Brown, 2010). 자녀에 대한 이타적인 목적이든 남성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대한 분노든 자녀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관념 자체가 어떠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역

시 마찬가지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은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으로 지적되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확장된 가족 관념과 네트워크로 인해 자녀를 다른 누군가가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자녀 동반 자살 시도의 경향이 크지 않음이 지적되기도 한다(Lee, 2009; 이현정, 2012 재인용). 또한 한국에서 가족은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생존 단위로서 작동해왔고, 교육, 주거, 금융, 보호, 부양 등을 1차적으로 가족적 의무로 만드는 정책들이 이를 심화시켜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장경섭, 2018).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실패를 가족의 실패로 여기며 자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IV. 여성의 생애 경험

1. 폭력 순환이라는 문제 설정과 여성의 우울

아동학대와 아내폭력 관계에 대한 설명에 빈번히 소환되는 가설 중 하나는 어린 시절 그것의 직, 간접 피해 경험이 성인기에 마찬가지로 범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른바 폭력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⁶⁾. 어린시절 가족간 폭력 행위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 공격적 행동의 정당성을 학습하게 된다는 차별접촉이론에 기반한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 대다수가 범죄자 집단을 표본으로 수행되었기에 마찬가지로의 아동기 경험 이후에도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상당수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Widom & Osborn, 2021), 남성집단을 통해 도출된 가설을 여성 범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피해대 경험으로 인한 공격성을 내현화 하는 경향이 더욱 크다는 주장(Moylan et al., 2010)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여성들의 어린 시절 피해대 경험을 우울증 등 내현화 중심으로 포착하려는 연구설계의 관점 자체가 젠더화 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Godinet et al., 2014; Fronimos & Brown, 2010).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엄밀한 방법을 통한 실증

6) 2017년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실태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했다는 여성과 남성의 상당수가 아동기 부부폭력 혹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선 외, 2017).

그 자체라기 보다 어린시절의 피학대 경험이 이후 아동학대로 이어지거나 절연되는 과정, 그 과정을 매개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여성을 폭력이나 빈곤과 같은 억압적 구조의 피해자로서만 조명하는 것은 그들의 주체성이나 특정한 행위성^{agency}을 가능하게 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Maher, 1997)과 함께 어린 시절 성적 피해나 성매매, 이른 결혼과 빈곤 등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여성의 생애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의미화 과정에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그 효과로서 범죄를 설명하려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Belknap, 2007).

앞서 제시한 사례17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남편의 실직,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양형조사 결과는 현재의 가족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그녀의 우울증 야기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다. 친부는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때쯤 엄마와 별거를 시작했고, 엄마는 홀로 일을 하며 피고인을 키워왔으며 몇 년 전 계부를 만났으나 그의 병수발을 하느라 고된 삶이 지속됐다. 계부는 최근 사망했고 그로 인한 엄마의 정신적 고통은 심화됐으며 이 와중에도 이전부터 지속된 친부의 엄마에 대한 폭력으로 최근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장모를 피신시킬 정도였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독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지방 일대 커피숍과 호프집 점원 생활을 이어나갔고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만19세에 딸을 낳았지만 전 남편의 지속된 폭력으로 그들을 떠나 생활하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 직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외도가 나타나던 즈음 아들을 임신했고, 임신 4개월이 될 무렵부터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친구 등 대인관계는 전혀 없었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타인이 손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집착하는 과민반응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삶은 젠더 폭력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남성의 학대를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경험이 폭력에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아동학대에 이른 것이라는 기존 논의들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른 나이 시작된 독립과 빈곤, 삶의 안정화 수단으로서 이성애 결혼, 자신과 유비되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삶, 딸과의 이별 경험 등이 현재의 삶의 조건과 서로 맞물리면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임승미, 2017; 추지현, 2016). 법원이 인정한 그녀의 아동학대 원인, 즉 우울

증이 야기된 과정을 여성들의 생애 경험과 그 상황에 대한 의미화 방식 속에서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Belknap, 2007; Maher, 1993).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적 피해(Goldberg, 2006), 가사 노동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배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Nazroo et al., 1997),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기 위한 침묵과 스스로의 욕망 부정(Nolen-Hoeksema, 2001) 등 다양하지만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성적, 감정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여성의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우울증이 이와 같은 젠더화 된 삶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을 개인의 병리가 아니라 사회적 고통으로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2. 양육의 기술과 피돌봄 경험의 부재

생애 과정 및 경험에 대한 이해는 남녀 불문, 자녀 돌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에도 중요해 보인다. 22개의 사례 중 사례4, 5, 8, 14 등 4건 피고인들은 이른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하고 빈곤을 경험했으며, 적절한 부모노릇(parenting)에 대한 지지는 물론 그 모델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법원이 평가한 이들이다. 사례4의 피고인은 3세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그녀의 동거남, 친구 등 세명이다. 엄마는 아이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한 후 홀로 양육하다 공동피고인인 현재의 동거남을 만났고 둘은 모텔에서 별 직업 없이 생활했다. 그러다 여성의 고등학교 친구인 또 다른 여성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 소도시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아이를 당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었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야기됐다. 그리고 셋의 동거 시작 2주만에 아이는 사망했다. 아이가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넌 내 친딸이었으면 진작 나한테 죽었다” 말하는 남성 피고인의 주도하에 나머지 두 여성이 폭력에 가담했다. 밥을 억지로 먹이고 도구를 이용해 폭행했다. 판결문에 기술된 사망 당시 아이의 모습은 참담했다. 법원은 아이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진단했지만,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과 부적절한 양육 행동이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셋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다. 아이 엄마인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만18세에 실시한 심리, 지능 검사에 따르면 사회적 연령이 만7세 6개월에 불과했고 그 와중에 원치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다. 그녀의 친구인 공동피고인 여성 역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자살 충동으로 인한 입원도 여러 번 했다. 아이 엄마와 남성은 기초생활 수급비가 감면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원룸텔에서 생활했다. 이들 모두 가족 등을 통해 돌봄을 받거나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버려나가기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엄마노릇의 역량이나 엄마됨^{motherhood}에 대한 인식은 생물학적 출산 경험^{maternity}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에 비하여 정작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하는지가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사례5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사례5의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혼자 출산 후 양육했다. 생계를 위해 출산 5개월여부터 외국인 바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고 젖병을 머리맡에 두고 아이를 홀로 둔채 새벽까지 일을 하는 생활이 반복되던 3개월째 아이는 사망했다. 아이에 대한 방임과 사망과의 구체적 인과관계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생후 6개월의 아이 얼굴에 이불이 감기거나 바닥에 코와 입이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수시로 관찰하고 보살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2심 판결문에는 그녀가 주위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했고,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다 고등학교 중퇴 후부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등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었다. 사례14의 피고인 여성의 상황 역시 유사했다. 그녀의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뇌병변증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사망 당시(생후 22개월)에도 생후 2-3개월 신생아와 같은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아이는 그녀와 함께 사용하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빠져 질식사했고 그녀 역시 사례5처럼 아이를 침대에 눕혀 재워둔 후 혼자 외출을 했다. 22살의 남편과 함께 새벽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사례8의 피고인인 어린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2심 법원은 아이를 방임한 행위를 넘어 그들의 부모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평소 음주, 흡연 및 쓰레기 방치 등 일상적 행위 습관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사례 피고인 모두가 부모나 다른 이들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모델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며 20대 초반 나이에

부모가 되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의 절반 가량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경제적인 수준을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모 일방의 부재 혹은 청소년 기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하는 등 누군가의 지지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든 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 외, 2013:52).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 역시 원가족과의 관계나 그 밖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김지연 외, 2013), 그들의 부모 역시 어린시절 적절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녀를 돌본 것을 보고하고 있다(정승민,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기대와 가치는 관련 지식의 습득, 사회적 지지망의 존부와 같은 현재적 상황을 넘어, 생애에 걸친 피돌봄의 경험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재생산권 부재와 돌봄노동

1. 영아 살해와 권리 없는 책임

IV.2절에 제시된 여성 피고인들의 임신, 출산 과정이 보여주듯 마찬가지로 피돌봄 경험의 부재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성별화 된 존재로서 생존하고 있다. 이때 젠더화 된 섹슈얼리티 규범은 여성의 여하한 성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다. 이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례20의 피고인은 언니(24세)의 동거남(26세)과 2년 넘게 성관계를 해오다 임신을 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확인한지 7개월여 후인 2020년 2월,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케 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지적 능력이 제한되어 일상 생활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기능적 수준일 뿐 추상적인 사고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며, 별다른 직업 없이 아버지로 부터 소액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현 주거지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여관을 전전했고 가족들은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출산을 맞이하도록 방임했다. 그런데 법원은 언니의 동거남은 물론 부친의 지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은 상황을 두고 그녀가 “성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G)에 터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녀의 빈곤 상황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가족이나 주위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 부재로 인해 심화된 성적 취약성은 오히려 ‘성범죄’에 대한 높은 재범위험성으로 평가된 것이다. 복지 대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빈곤과 ‘성적 방종’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하는 부권주의 형벌 국가의 모습(Gelthrope, 2010; West & Lichtenstein, 2006)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사망 아동의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는 전체 42명 중 19명에 해당하는 45.2%로 가장 많다(보건복지부, 2020:7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2건 중에서도 이는 8건에 해당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사례 5, 20, 21, 22)은 엄마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사례22의 피고인은 2020년 1월,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중단 수술을 요구했으나 임신 28주가 지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분만하다 변기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 집 마당에 묻었다. 2심 법원은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지나 능력을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판단이다. 유사한 상황이었던 사례5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로서 양육의 부담을 홀로 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것” 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이 질 수 밖에 없다고 설시했다. 사례21에 대해서는 미숙아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홀로 출산한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피고인이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 비난의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덧붙이면서 말이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모자보건법, 의료법 등 관련 조항은 남아 있기에 의료체계를 통한 여성들의 임신 중단 실행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위의 사례들은 성과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실현이 어려운 문화적 조건은 여성들의 책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동 보호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화와 함께 2021년 5월, 형법상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11031호)

이 발의되었다. 이와 같은 낙태죄 폐지와 영아살해죄 법정형 상향 움직임의 동시 등장은 우연이라기보다 후자가 전자의 기능적 보완물이 되고 있는 상황, 여성의 몸에 대한 젠더화 된 통제 기제가 ‘아동 보호’를 매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2. 양육 부담과 엄마노릇의 차이들

자녀 양육의 과정은 분노, 우울, 좌절감 그리고 사랑과 기쁨 등 다기한 감정을 오가게 만들지만 그 감정의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을 더욱 높게 지각하고 더 강압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지연 외, 2003; 조숙 외, 2015). 이러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포함해 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교육, 의료 등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 조정, 그 밖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맺기 등 다양한 어려움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양육 부담감이다. 즉 양육 부담감은 그저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개인적 심리 반응이 아니라, 양육자가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과 양육을 둘러싼 제반 조건 및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키테이가 돌봄 제공과정에서 파생되는 돌봄제공자의 의존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의존이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Kittay, 2019). 돌봄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감은 22건의 사례 중 7건(사례 1,2,7,11,14,18,19)에서 발견될 정도로 아동학대에 있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IV장에 제시한, 우울증이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된 여성 피고인들은 그간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주목해 온 것처럼 양육 스트레스 혹은 양육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Goldman et al., 2003; 민현숙·문영경, 2013; 이재정·박명숙, 2014). 사례 18의 피고인은 9세의 딸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엄마다. 그녀의 딸은 사회적 연령이 약 2세 5개월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은 물론 아이가 다닌 학교의 교사, 피고인의 담당 의사가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그녀는 장애아를 위해 최선의 양육을 해왔고 평소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계 욕구가 활발한 반면 장애아를 홀로 돌보느라 타인과 접촉하고 친밀감을 공유할 기회가 제한된 채 양육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부부 관계는 원만했지만 남편 역시 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희생을 신청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을 겪었다. 사례7 피고인의 아들은 지적장애 3급, 사례14의 22개월된 아이는 뇌 병변중증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사례18처럼 홀로 아이를 돌보며 빈곤에 시달렸던 전업주부들이다. 이들이 엄마노릇 수행 과정에서 느꼈을 혼란과 고통에 대하여 엄마라면 충분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위로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영유아나 심각한 중증장애인 등 불가피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상호 성장을 경험하거나 기대하기 힘든 돌봄의 관계, 그 한계나 완결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이로 인해 돌봄제공자의 상황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⁷⁾ 자녀의 장기적 질병과 만성적 장애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아동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노충래, 2002).

많은 아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⁸⁾가 된 여성들의 상황이 취업모들과 마찬가지로 보기는 힘들었다. 사례7의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지적 장애 3급의 딸(12세), 현 남편의 아이 둘(2세, 10개월)을 홀로 돌보았다.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남편이 큰 딸에게 함부로 훈육을 하는 상황에 화가날 때마다 그녀의 딸에 대한 증오감은 더해졌다. 이에 더해 가난, 현재 남편과의 불화가 중층적으로 작동하면서 딸에 대한 체벌도 심화되어 갔다. 그러다 힘겹게 재운 두 아이를 큰 딸이 깨우고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자 영하의 날씨에 찬물의 욕조에 들어가게 해 사망케 했다. 2심 판결문에 기재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수준이었으며,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해소할만한 다른 심리적 자원은 부족했다. 가난, 우울증과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인정된 사례1의 피고인은 홀로 두 아이를, 사례11의 피고인은 남편의 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 셋을 양육한 엄마다. 이들의 상황은 젠더, 계층, 장애가 맞물리면서 엄마노릇을 하는 여성의 위치를 어떻게 상이하게 구성해내는지를 보여준다.

취업모의 심적 부담은 대부분 공동 양육자와의 역할 갈등에서 오는 분노, 아이를 옆에서 돌보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주되다면, 전업주부 대부

7) 2013년 실시한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주 돌봄자는 91.2%가 어머니이며 장애아동을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을 한 부모는 49%에 달했고, 근무시간을 줄인 경험은 40.8%에 이르렀다(최복천 외, 2013).

8) 2020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사망 사례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다니지 않았던 경우가 전체의 48.8%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20:72).

분은 육아과정 그 자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조숙 외, 2015). 또한 취업모들은 아동을 직접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위탁 시설에서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피해자 내지 제3자의 입장에 더 자주 처해있는 반면,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양육스트레스 그 자체로 인해 아동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미예·박동영, 2009).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와 경력단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취업지원 및 24시간 보육지원 등이 여성 정책의 주된 과제로 설정,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고무적이지만 아이들을 온전히 홀로 돌봐야 하고, 장기적 취업이나 자녀 성장에 대한 기대, 심지어 관련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위와 같은 여성들에게 일·생활 양립은 거리가 멀다. 현재 여성정책이 상정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이유다. 나아가 돌봄을 그저 공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분배하는 것이 종국적 해법일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엄마는 물론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가족 안팎에서 그 역할을 떠안고 있는 돌봄제공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김수정·황정미, 2019)과 더불어 돌봄의 무게를 재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22개의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형화된 아동학대와 달리 임신 중단의 실패와 분만 직후의 영아살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남성의 가족 통제 등 그 양태와 배경이 다양하다. 이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아동학대 담론에서 남성의 비가시화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젠더 관계나 남성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내학대와 자녀학대가 그저 동시 발생을 넘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 메커니즘,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남성 정체성과 그 불안을 심화시키는 가족 중심 복지체계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개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실천적이고 장기적인 개입 방안이 제언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 부담감과 우울로 환원할 수 없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생애 경험, 유년기 성적 피해나 목격, 불안정 노동의 지속과 이른

결혼, 빈곤, 사회적 지지망 등 피돌봄 경험의 부재와 그 연쇄가 엄마 및 아내됨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생애 경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젠더 관점의 개입 프로그램 구축 역시 가능해 보인다. 셋째, 젠더는 계층, 장애, 섹슈얼리티와 교차하면서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위치와 취약성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아동 보호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형벌화 방식은 아동보호에도 실패를 야기하고 있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 인식을 통해 아동학대 현상을 바라보는 것, 나아가 여성을 ‘보호자’로 호명해내는 젠더 체계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페미니즘은 젠더 폭력, 돌봄, 교차성,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관심을 버리면서 그 개념화와 사회 운동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분절적 접근으로 인해 그것들의 총체화 된 형태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라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폭력 순환 가설과 같이 젠더를 탈각한 채 양적 대표성 자체만을 지향하는 연구, 여성들 내부의 차이와 구체적 삶의 맥락을 소거한 양육 부담감에 대한 실증이 아동학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는 예방 기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시도에 대한 문제제기,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여성의 경험과 필요를 고려한 교정정책이 요구된다. 일·생활 양립 지원, 경력단절 예방이나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와 같은 정책적 접근이 과연 어떤 여성들을 그 수혜자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여성정책의 기본 계획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호명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젠더 관계의 모순을 간파하면서도 대응하는 전략들, 그 저항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조건들을 식별하고 개입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아동의 안녕은 돌봄 제공자의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돌봄 노동과 생애 지속된 성적 존재로서의 경험으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을 형벌화, 의료화 하는 통제 방식을 대안으로 삼는 접근에 대한 비판적 젠더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제한적 사례를 다루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온전히 포착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향후 연구 역시 개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미예·박동영,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2009.
- 김수정·황정미, “사립유치원 비리와 돌봄 공공성: 회계 투명성을 넘어”, 페미니즘 연구 제19권 제1호, 2019.
- 김영옥·메이·이지은·전희경,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봄날의 책, 2020.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노충래,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3호, 2002.
- 민현숙·문영경,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3.
- 박언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모성 경험의 구성과 행위상”, 한국여성학 제30권 제1호, 2014.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020.
- 신윤정·이소영·유재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II: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안성경·양지혜·정익중,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38권, 2012.
- 이상균·이봉주·김세원·김현수·유조안·장화정·진미정·박지명,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3호, 2017.
- 이세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자로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 제1호, 2020.
- 이인선·황정임·최지현·조윤주,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이재경·박명숙,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48호, 2014.

- 이현정,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살펴본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관념”, 한국학연구 제40권, 2012.
- 임승미, “청소년 미혼모의 모성경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 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17.
- 장경섭, 내일의 종언(終焉)? :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 장희선·김기현·김경희,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제54권, 2016.
- 정승민, “최근 우리나라 자녀살해의 양상”,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2호, 2018.
- 정혜숙,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제25권 제4호, 2009.
- 조숙·정혜정·이주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5.
- 추지현, “성폭력을 엄벌하다”, 한국여성학 제30권 제3호, 2014.
- _____, “성/폭력 증충피해와 젠더”, 한국여성학 제32권 제4호, 2016.
- Adinkrah, Mensah, “Patriarchal Family Ideology and Female Homicide Victimization in Fiji”,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2(2), 2001.
- Ashe, Marie & Naomi R. Cahn, “Child Abuse: A Problem for Feminist Theory”, Texas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 1993.
- Belknap, Joanne(윤옥경 역), 여성범죄론, 교우사, 2007.
- Bennett, Larry & Oliver J. Williams, “Substance Abuse and Men who Batter: Issues in Theory and Practice”, Violence Against Women 9(5), 2003.
- Chesney-Lind, Meda, “Patriarchy, Crime, and Justice Feminist Criminology in an Era of Backlash”, Feminist Criminology 1(1), 2006.
- Collins, Elizabeth A. et al., “A Template Analysi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Survivors’ Experiences of Animal Maltreatment: Implications for Safety Planning and Intervention”, Violence Against Women 24(4), 2018.
- Folbre, Nancy(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토하나의문화, 2001.
- Fox, Marie, “Feminist Perspectives in Theories of Punishment”, In Feminist

- Perspectives in Theories of Punishment, Routledge, 2000.
- Fronimos, Ioannis, I. & D. Brown.,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male dep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review, 12(1), 2010.
- Gelstrophe, Loraine, “Women, crime and control”,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0(4), 2010.
- Godinet, Meripa T. & Fenfang Li & Teresa Berg, “Early Childhood Maltreatment and Trajectories of Behavioral Problems: Exploring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Child Abuse & Neglect 38(3), 2014.
- Goldberg David, “The Aetiology of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36(10), 2006.
- Goldman, Jill et al., A Coordinate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oundation for Practice,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ren’s Bureau, 2003.
- Gordon, Diana R., “Drugspeak and the Clinton Administration: A Lost Opportunity For Drug Policy Reform”, Social Justice 21(3), Social Justice/Global Options, 1994.
- Kittay, Eva F.(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3.
- Kruttschnitt, Candace, “Contributions of Quantitative Methods to the Study of Gender and Crime, or Bootstrapping Our Way into the Theoretical Thicke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2(2), 1996.
- Lapierre, Simon & Isabelle Côté, “Abused Women and the Threat of Parental Alienation: Shelter Workers’ Perspectiv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5, 2016.
- Lee, HyeonJung,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Rural North China”, Ph.D. Thesis an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Washington University, 2009.
- Linda Gordon, Heroes of Their Own Lives: The Politics and History of Family Violenc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2.

- Lister, Ruth, “Children (but not women) First: New Labour, Child Welfare and Gender”, *Critical Social Policy* 26(2), 2006.
- Maher, Lisa, “Punishment and Welfare: Crack Cocaine and the Regulation of Mothering”, In Claire Feinman(ed.), *The Criminalization of a Woman’s Body*, The Haworth Press, 1992.
- _____, “Readings of Victimization and Volition”, In *Sexed Work: Gender, Race and Resistance in a Brooklyn Drug Market*, Clarendon Press, 1997.
- McDaniel, Marla & Kristen S. Slack, 2005, “Major Life Events and the Risk of a Child Maltreatment Investig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2), 2005.
- Messerschmidt, James W. and Stephen Tomsen, “Masculinities and crime” in DeKeseredy, W. & Dragiewicz, M., *Routledge Handbook of Critical Criminology*, Routledge, 2018.
- Miller, Jody, “2. Doing Crime as Doing gender? masculinities, femininities, and crime” in Rosemary Gartner & Bill McCarthy,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Sex, and Cr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Moylan, Carrie A. et al.,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1), 2010.
- Nazroo, James Y. & Angela C. Edwards & George W. Brown, “Gender Differences in the Onset of Depression following a Shared Life Event: a Study of Couples”, *Psychological Medicine* 27(1), 1997.
- Nolen-Hoeksema, Susan,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2001.
- Semaan, Ingrid & Jana L. Jasinski & Anne Burbriski-Mckenzie, “Subjection, Subjectivity, and Agency: The Power, Meaning, and Practice of Mothering Among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19(1), 2013.

- Stanton, Josephine & Alexander Simpson & Trecia Wouldes, “A Qualitative Study of Filicide by Mentally Ill Mothers”, *Child Abuse & Neglect* 24(11), 2000.
- Tajima, Emiko A., “Correlates of the Co-Occurrence of Wife Abuse and Child Abuse Among a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6), 2004.
- Tronto, Joan C.(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3.
- Violence Against Women* 5(2): 134-154
- West, Desirée A. & Bronwen Lichtenstein, “Andrea Yates and the Criminalization of the Filicidal Maternal Body”, *Feminist Criminology* 1(3), 2006.
- Widom, Cathy S. & Max Osborn, “The Cycle of Violence: Abused and Neglected Girls to Adult Female Offenders”, *Feminist Criminology* 16(3), 2021.
- Wilczynski, Ania, “Child Killing by Parents: A Motivational Model”, *Child Abuse Review* 4, 1995.

Gender Anlysis of Child abuse: Masculinities, Caring, Reproductive Rights

Choo, Jihyun*

This study started with the necessity for gender-based research on child abuse. Accordingly, I examined 22 cases filed with courts in 2020 as cases in which children died due to abuse and suggest the issue of gender research on child abuse. First, Studies on mulitple victimization of the wife abuse and child abuse, different ways of meaning suicide after filicide, and differences in offending methods ask to view child abuse as a gendered phenomenon. Second, women's various lived experiences affect women's mothering as well as their perception of roles in the family. It suggests that transformation of gender is a prerequisite for preventing child protection and need for a correction policy that considers the life courses of women. Third, not only gender that distributes care responsibilities unequally, but also class, disability, and depression created women's vulnerability as care provider intersectionally. In addition, the reality that women's rights to sexuality and reproduction are not guaranteed makes infanticide inevitable.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to reevaluate the value of caring.

❖ key words: child abuse, gender, wife abuse, masculinities, caring, feminist criminology

투고일 : 11월 30일 / 심사일 : 12월 28일 / 게재확정일 : 12월 28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조은경* · 박지선**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처벌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선족일 때와 한국인일 때, 더불어 피고인이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사건에 대한 처벌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특성(민족성, 성별)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자가 지각한 피고인의 책임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 매개 효과가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20-59세의 총 275명(남성 138명, 여성 1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의 성별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민족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경우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일 때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하게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63>.

❖ 주제어 : 살인, 조선족, 여성, 처벌 판단, 권위주의적 성격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촉조사연구원

**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I. 서론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과 2014년 11월 수원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팔달산에 유기한 박춘풍 사건 등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에 의한 살인 범죄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범죄의 발생 및 위험 지각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에 영향을 미친다(허윤철·임영호, 2015; Romer et al., 2003). 실제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언론의 범죄 보도율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범죄가 실제로 더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며(박지선·박상조, 2013; Diefenbach & West, 2001), 범죄 보도를 더 많이 접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낀다(이기수·윤상연, 2017).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한 두 사건 발생 전인 약 10여 년 전 진행된 연구에서는 조선족에 대해 두드러진 고정관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선족에 대한 인상 또한 대체로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김동수 외, 2011). 오히려 조선족이 한국인과 유사한 점이 많고 사회적 거리감이 적다고 느꼈다(김동수 외, 2011; 황정미 외, 2007).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조선족을 범죄와 연결 짓는 인식을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김지혜, 2018; 조우연, 2019).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보도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한국인에 의한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보도되었으며,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나 범죄자가 조선족인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조·박승관, 2016). 특정 집단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범죄 수에 비해 보도량이 많은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에 대한 과장된 위험 지각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Chirics & Eschholz, 2002; Poindexter et al., 2003), 조선족 범죄가 과잉 보도되는 경향은 조선족 전반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총 22개 국가와 새터민 중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희정, 2017). 조선족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인식은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범죄에 대한 인식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가해자 특성에 따른 언론의 과잉보도 현상은 조선족뿐만 아니라 여성 범죄자를 대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 연구에서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언론 보도 방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성 범죄자를 다루는 기사는 남성 범죄자를 다루는 기사에 비해 해당 사건이 신문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어지거나 앞면에 실릴 확률, 단독 보도될 확률이 남성 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심지어 글자 크기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Grabe et al., 2006).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여성 범죄자 수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범죄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보도 비율이 남성 범죄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Estrada et al., 2019). 국내에서도 최근 여성 범죄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가해자의 성별이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범죄 보도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과 편리성도 있으나, 사회 현상이 왜곡,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족이나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는 그간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고정관념과 귀인에 따른 사건 판단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인 일보다 범죄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일 때 두드러진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는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 Heider, 1958)을 발전시키며 사건의 원인을 판단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귀인 이론은 사건의 원인을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사건이 행위자의 성격이나 능력 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적 귀인, 사건이 그 당시의 상황이나 운과 같이 행위자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적 귀인으로 구분된다.

귀인 판단을 할 때 사회적 맥락이나 고정관념 또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대상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의 특징이 일반화되어 전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미한다(Myers & Twenge, 2019; Strangor, 2009). 따라서 사건 행위자의 특성이 판단자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에 내적 귀인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혜숙, 1993; LaCosse et al., 2016). 특히, 고정관념은 그 자체로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과잉 일반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편견(prejudice)과 부정적 태도인 차별(discrimination)로 이어질 수 있다(LaCosse et al., 2016; Myers & Twenge, 2019; Strangor, 2009). 예를 들어, 조선족의 범죄율이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과잉 일반화되어 ‘조선족은 범죄자’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조선인에 대한 실제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선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보다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에게 있다고 내적 귀인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 나아가, 내적 귀인은 행위에 대한 처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rdon과 그의 동료들(1988)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들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강도와 횡령을 묘사하는 글을 읽고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때 조건에 따라 가해자는 흑인 혹은 백인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인종적 특성이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즉 흑인의 경우에는 강도, 백인의 경우에는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 긴 형량을 부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많은 연구가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편향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지지했다. 또한 박희찬과 김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절도 범죄와 관련하여 한국인에 비해 동남아시아인이 고정관념에 보다 부합한다고 평가되었는데, 절도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범죄자가 한국인보다 동남아시아인일 때 범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국내 연구는 범죄의 전형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최승혁, 2020; 최승혁·허태균, 2012; 최승혁·허태균, 2020). 해당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전형적으로 묘사된 상황의 범죄자가 고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최승혁·허태균, 2020). 또한, 이러한 효과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혁, 2020).

2. 범죄 사건 판단에서 편향을 일으키는 요인: 가해자의 민족성과 성별

가. 가해자 민족성과 범죄 사건 판단에서의 편향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편향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가해자의 성별(정지원 외, 2015), 나이(김현승·박지선, 2020), 피해자와의 관계(이정원·김혜숙, 2012; Gravelin et al., 2019), 사회경제적 지위(박희찬·김혜숙, 2010; 홍세은 외, 2018) 등에 따른 차이를 주로 살펴보았다. 인종 및 민족 갈등이 큰 사회 문제인 외국에서는 이에 따른 판단 편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해 왔다. 가해자의 인종적 혹은 민족적 특성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해자가 인종 또는 민족적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할 경우, 그렇지 않은 가해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Espinoza et al., 2015; Rozmann & Levy, 2019; Rozmann & Walsh, 2018). 예를 들어 가해자가 백인보다는 흑인인 경우에 범죄가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해자가 아프리카계이거나 라틴계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 판단을 받았다(Doerner & Demuth, 2010; Lowder et al., 2019; Singh & Sprott, 2017).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수집단이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범죄 사건 판단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향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선족은 인종이나 민족적 구분상 한국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관련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다(양은경, 2010).

최근에는 조선족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조인숙·김도연, 2020). 한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트위터(twitter) 메시지를 분석하였는데, 중국 동포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타국 동포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연구 대상이 되었던 집단 중 유일하게 범죄와의 연관성이 주요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영 외, 2018). 또한 조선족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해당 기사가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실제와 다름을 전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여전히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으며, 더 나아가 기사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배준환·이춘호, 2018).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여러 이주민 집단(22개 출신국과 조선족,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김희정(2017)은 이주민 집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왔는데, 대체로 각 집단의 출신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집단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조선족은 특유의 범죄적 이미지가 강해 다른 집단과 함께 묶이지 못했으며, 인터뷰에 응한 모든 참가자가 조선족은 잠재적 범죄자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민족적,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약 10년 전에 진행된 연구(박희찬·김혜숙, 2010)만이 범죄자의 인종을 고려한 실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에서는 살인을 포함한 총 8개 범죄 유형에 대해 가해자의 국적(한국 대 동남아 노동자),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등을 달리하여 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존재 여부와 이에 따라 처벌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합하는 특성이 있을 때(예: 동남아 노동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를 더 오랜 기간 수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박희찬·김혜숙, 2010).

앞서 살펴본 일련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판단자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의 민족성에 따라 사건에 대한 책임 수준의 지각 혹은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살인 사건에서, 조선족 피고인이 한국인 피고인보다 더 엄중한 판단(사건에 대한 높은 책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나. 가해자 성별과 범죄 사건 판단에서의 편향

가해자의 성별 또한 범죄 전형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범죄율이 여성의 범죄율보다 훨씬 높으며, 2020년 발생한 범죄 중에 몇몇 유형을 제외한 여러 범죄에서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대검찰청, 2021). 그러나 이제까지 범죄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피해자나 판단자의 성별에 비해 가해자 성별의 효과는 국내에서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범죄에 관한 인식 연구가 대체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으로 설정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실제로 가해자 성별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저지른 범죄가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ye et al., 2006).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남성의 범죄는 여성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게 여겨졌다(Savage et al., 2017; Wilson & Smirles, 2020). 호주의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경찰들은 동일한 범죄일지라도 가해자가 남성이면 더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Kite & Tyson, 2004).

그러나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범죄 관련이며, 살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찾기 어렵다. 다만 언론에서 여성 살인 범죄자와 남성 살인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Estrada et al., 2019; Grabe et al., 2006) 살인에 대한 인식에서도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약 80%가 남성으로 나타나므로(대검찰청, 2021), 살인에 있어 남성 범죄자를 보다 전형적으로 지각하여 이로 인해 가해자 성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판단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앞서 살펴본 범죄

전형성 가설에 따라, 더 전형적인 남성 살인 범죄자는 여성 살인 범죄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 살인 사건에서 남성 피고인이 여성 피고인보다 더 엄중한 판단(높은 책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3.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심리적 개념이다(Adorno et al., 2019).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대상을 강자와 약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강자에게는 무비판적 수용 및 복종을 보이고 약자에게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다(홍지웅 외, 2016).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그간 인종 및 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지역 갈등, 성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재신·한성열, 2004; Kauff et al., 2013).

민경환(1989)은 Adorno 외(2019)가 제시한 권위주의의 9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총 35문항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해당 척도는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민경환, 1989). 또한, 최근에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강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원·권구순, 201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무자 중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강방글·이영선, 2013).

더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격의 효과는 은밀한 차별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폭력, 또는 범죄 상황 및 판단에서도 나타난다. 중학생들의 권위주의와 학교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권위주의 성격 특성이 높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동조와 방관 경험이 더 많았다(이종원 외, 2014).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단에서도 판단자의 성별이나 연령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권위주의적 성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림·박지선, 2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던 피고인의 특성(민족성 및 성별)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3.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의 특성(민족성 및 성별)이 사건에 대한 책임 지각 및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조절할 것이다.

4. 사건에 대한 책임 지각 및 처벌 판단

범죄 사건 판단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 책임, 원인, 그리고 처벌이나 형량,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양동옥 외, 2012; 이가영 외, 2018; 조병철·김혜숙, 2018). 이러한 변인들은 종종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별다른 구분 없이 종속 변인으로 함께 측정되었다. 그러나 Critchlow(1985)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판단의 영역들이 서로 다름을 주장하였다. 즉, 다양한 범죄 행위(위조, 횡령, 폭행, 강도 등)에 관한 판단을 비교하여 행동의 유형마다 종속 변인 값이 나타나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과추론(cause)과 책임(responsibility), 비난(blame), 처벌(punishment)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ritchlow, 1985).

국내에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세부적으로 (1) 행위자의 책임 혹은 비난, (2) 피해자의 잘못, (3) 처벌 크기의 3가지 변인으로 구분되었다(고재홍, 1991). 그러나 이후로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가해자 요인에 따른 판단자들의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처벌 판단과 책임 지각을 구분하였다(홍세은 외, 2018). 이들은 가해자의 범행 의도가 불확실할 때,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판단자가 지각한 책임의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판단자가 내리는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판단이 지각된 책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책임 지각과

처벌 판단을 구분하는 것은 살인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특성(민족성 및 성별)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 지각과 처벌 판단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가해자 민족성 및 성별)에 따른 사건의 처벌 판단에서, 판단자들이 지각하는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책임 수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수준이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4. 피고인 특성(민족성, 성별)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조절할 것이다.

Ⅲ.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59세의 한국인 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참가자 중 남성은 총 138명(20대 30명, 30대 34명, 40대 33명, 50대 41명), 여성은 137명(20대 34명, 30대 30명, 40대 42명, 50대 31명)이었다. 남성은 최소 22세부터 최대 59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40.6세였다($SD = 10.83$). 여성은 최소 20세부터 최대 59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39.41세였다($SD = 10.71$).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273) = .89, n.s.$).

2. 연구 절차

참가자들은 연구 안내문을 읽고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2×2 (피고인 민족성: 한국인, 조선족; 피고인 성별: 남성, 여성)의 네 가지 실험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어 배정받은 시나리오를 읽었다. 이후 조작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성별과 민족성에 대해 응답한 뒤, 자신이 읽은 시나리오 속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적 성격 척도에 응답하였다.

3. 연구 변인

가. 독립변인: 피고인 민족성, 피고인 성별

독립변인인 피고인의 민족성은 한국인과 조선족으로 구분하였으며, 피고인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인’은 국적에 의한 구분이나, ‘조선족’에 비해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구 편의상 ‘한국인’과 ‘조선족’으로 피고인 민족성을 표기하였다.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판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인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부분(피고인 민족성과 성별)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외생 변인의 개입을 통제하였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한국인 남성, 33세)를 피고인(한국인 남성/조선족 남성/한국인 여성/조선족 여성, 35세)이 말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한 쪽 다리를 저는 피고인에게 ‘병X’이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허리, 가슴을 찔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싸움을 말려도 피해자가 듣지 않아 단지 겁만 주려고 칼로 허벅지를 찌르려고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는 바람에 그 왼팔과 허리 부분을 찌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쥐고 덮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가슴을 찔리게 된 것뿐, 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일부러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고 진술하였다.

나. 매개 변인 및 종속 변인: 피고인에 대한 책임, 처벌 판단

본 연구의 매개 변인인 피고인에 대한 책임과 종속 변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은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책임 지각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문항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피고인의 책임과 처벌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7점에 가까이 응답할수록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다. 권위주의적 성격

참가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민경환(1989)의 권위주의 성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등의 속성을 측정하는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총 5점 리커트(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를 권위주의적 성격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했으며, 가설 3의 조절효과와 가설 4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3.5버전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본 뒤,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및 피고인에 대한 판단 차이를 t검정과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1과 2의 피고인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책임 및 처벌 판단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가설 3의 조절효과와 가설4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1. 사전 분석 및 기술통계

본 분석을 시행하기 전, 각 실험 조건에 따라 할당된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 조건 간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_{\text{성별}} = .10$, $p_{\text{성별}} = .99$, $F_{\text{연령}} = .19$, $p_{\text{연령}} = .91$). 참가자의 특성을 제외한 권위주의, 피고인 책임, 피고인 처벌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권위주의적 성격,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의 기술통계

변인	N	min	max	M	SD
권위주의	275	1.29	4.29	2.76	.51
피고인 책임	275	1.00	7.00	5.59	1.30
피고인 처벌	275	1.00	7.00	5.28	1.25

2. 판단자 특성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및 피고인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권위주의적 성격과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우선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에 대해 더 책임이 크다고 보았으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권위주의적 성격 및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먼저 판단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에서는 연령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변인에 따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후 분석 과정에서 판단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였다.

〈표 2〉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

변인	성별				<i>t</i>	<i>df</i>
	남성		여성			
	<i>M</i>	<i>SD</i>	<i>M</i>	<i>SD</i>		
권위주의	2.81	.50	2.71	.51	1.66	273
피고인 책임	5.77	1.23	5.40	1.34	2.36*	273
피고인 처벌	5.43	1.21	5.13	1.27	1.98*	273

* $p < .05$

〈표 3〉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

변인	<i>b</i>	<i>SE</i>	β	<i>t</i>	<i>F</i>	R^2	adjusted R^2
권위주의	.01	.00	.13	2.20	4.79*	.02	.01
피고인 책임	-.01	.01	-.11	-1.90	3.60	.01	.01
피고인 처벌	-.01	.01	-.07	-1.21	1.45	.01	.00

* $p < .05$

3. 피고인의 민족성 및 성별에 따른 판단 차이

독립변인인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이때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책임 지각에서 피고인의 성별과 민족성은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에서는 피고인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고인 민족성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에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별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 피고인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책임 및 처벌 판단

변인	독립 변인	SS	df	MS	F	partial η^2
피고인 책임	피고인 성별 (a)	.85	1	.85	.51	.00
	피고인 민족성 (b)	1.25	1	1.25	.76	.00
	a × b	.29	1	.29	.18	.00
	(참가자 성별)	9.99	1	9.99	6.05 [*]	.02
	(참가자 연령)	6.87	1	6.87	4.16 [*]	.02
피고인 처벌	피고인 성별 (a)	4.13	1	4.13	2.72	.01
	피고인 민족성 (b)	6.52	1	6.52	4.30 [*]	.02
	a × b	.05	1	.05	.03	.00
	(참가자 성별)	6.22	1	6.22	4.10 [*]	.02
	(참가자 연령)	2.72	1	2.72	1.79	.01

* $p < .05$

4.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피고인의 민족성과 권위주의, 피고인 책임 및 처벌 판단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피고인의 민족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다른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일 때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일수록 피고인의 책임을 적게 평가하며, 처벌 또한 약하게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책임과 처벌 판단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5〉 피고인 민족성과 권위주의, 책임 지각 및 처벌 판단의 상관관계

	피고인 민족성	권위주의	피고인 책임
권위주의	.00		
피고인 책임	.05	-.12 [*]	
피고인 처벌	.12 [*]	-.15 [*]	.74 ^{***}

* $p < .05$, *** $p < .001$

5. 피고인 민족성이 책임 및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효과

판단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피고인의 민족성이 피고인에 대한 책임 시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75$, $SE = .30$, $t = 2.46$, $p = .02$).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피고인 민족성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1단계에는 통제변인을, 2단계에는 참가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이 조선족인 경우에는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책임이 덜 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판단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피고인의 민족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조사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53$, $SE = .29$, $t = 1.82$, $p = .07$). 그러나 피고인 민족성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 책임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피고인이 조선족인 경우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이 더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권위주의적 성격이 피고인 책임 지각에 미치는 효과

피고인 민족성 = 한국인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6.86		8.63	
(참가자 성별)	-.25	-.10	-.32	-.13
(참가자 연령)	-.02	-.21	-.02	-.18
권위주의			-.65	-.26
R^2		.05		.12*
<i>F</i>		3.49*		5.80**

피고인 민족성 = 조선족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6.62		6.54	
(참가자 성별)	-.51	-.20	-.51	-.20
(참가자 연령)	-.01	-.04	-.01	-.04
권위주의			.03	.01
R^2		.04		.04
<i>F</i>		2.80		1.86

* $p < .05$, ** $p < .01$

〈표 7〉 권위주의적 성격이 피고인 처벌 판단에 미치는 효과

피고인 민족성 = 한국인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5.86		7.49	
(참가자 성별)	-.07	-.03	-.13	-.05
(참가자 연령)	-.02	-.14	-.01	-.11
권위주의			-.60	-.24
R^2		.02		.08**
<i>F</i>		1.24		3.55*

피고인 민족성 = 조선족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6.35		6.70	
(참가자 성별)	-.53	-.22	-.55	-.23
(참가자 연령)	-.00	-.03	-.00	-.02
권위주의			-.14	-.06
R^2		.05*		.05
<i>F</i>		3.60*		3.54

* $p < .05$, ** $p < .01$

6. 피고인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

피고인의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책임 지각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형 4번을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랩과 통제변인은 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지각은 피고인의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b = .10$, $SE = .11$, 95% CI $[-.13, .32]$). 즉,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보다 조선족인 경우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피고인의 책임 지각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피고인 민족성과 처벌 판단에서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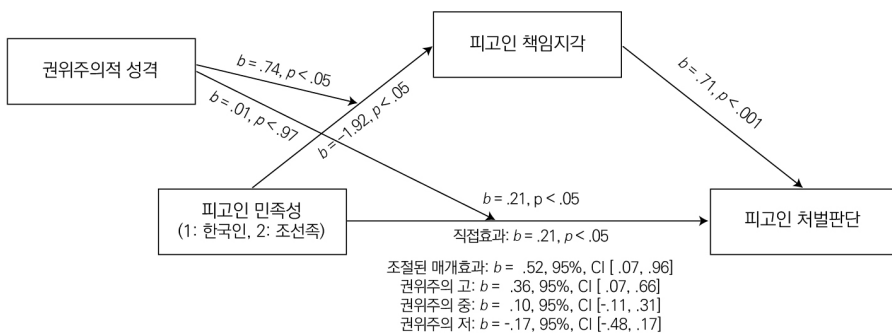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피고인 민족성 → 처벌 판단	.31	.15	.01	.60
직접효과				
피고인 민족성 → 처벌 판단	.21	.10	.01	.41
간접효과				
피고인 민족성 → 책임 지각 → 처벌 판단	.10	.11	-.12	.31

7.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인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매개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PROCESS macro의 모형 8번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과 통제 변인은 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의 민족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 .53, $SE = .23$, 95% CI $[.07, .98]$). 구체적으로,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보통 수준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조선족일

때 처벌 판단을 함에 있어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에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처벌 또한 더욱 강한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V. 논의

조선족이나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여전히 희소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가해자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책임 지각과 실제 처벌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같은 살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같은 범죄라도 가해자가 민족적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할 때 더 엄중한 처벌 판단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oerner & Demuth, 2010; Sing & Sprott, 2017). 더불어,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위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특성(민족성 및 성별)에 따른 사건 판단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사건일지라도 피고인의 민족성에 따라 책임 및 처벌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피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개인의 민족성을 근거로 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장기적인 사회 갈등을 불러온다(Chiricos & Eschholz, 2002). 특히, 전형성과 부합하는 사건은 판단자의 고정관념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이 처음 세운 가설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확증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최승혁, 2020), 이는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일반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편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실무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정관념과 인지 편향이 형사사법 실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피고인의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참가자들에게서는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조선족인 피고인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피고인의 책임 또한 더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집단인 외국인 또는 소수 민족에게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편견이 실제 처벌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결과는 책임 지각과 처벌 판단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구분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고재홍, 1991; Critchlow, 1985)을 지지하며, 이는 일반인이 사건 관련 판단을 내릴 때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의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범죄 사건 판단 관련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종속 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가해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전형성에 따른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대체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성별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살인에서의 가해자 성별 효과를 살펴보았다. 강간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있어 그 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하나, 살인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체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시된 살인 사건 시나리오에서 가해자가 남성

인 조건이 전형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남성인 것에 비해 전형적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자가 지각하는 전형성의 정도가 선행연구들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범죄자의 비전형성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성별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대체로 외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실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 만큼 실험연구 결과에 비해 현실이 과장 또는 축소되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판단 차이를 살펴볼 때, 범죄 유형별로 전형적인 가해자의 성별에 대해 사전에 점화(priming)를 하거나 성별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추가하여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조선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민족성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건에 대한 책임 지각을 넘어 처벌 판단에까지 피고인의 민족성에 따른 효과가 미치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는,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사사법 판단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가해자의 민족성이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다민족 사회에서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대검찰청 (2021). 2020 범죄분석.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dorno, T., Frenkel-Bre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2019).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Verso Books.
- Myers, D. G., & Twenge, J. M. (2019). *Social Psychology*(13th), McGraw-Hill Education.
- Strangor, C. (2009). “The Study of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ithin Social Psychology: A Quick History of Theory and Research”. In T. D. Nelson (Eds.),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 1-12). Psychology Press.

2. 논문

- 강방글·이영선 (2013).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6, pp.1-21.
- 고재홍 (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1), pp.1-21.
- 김동수·김도환·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pp.1-23.
- 김재신·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pp.97-114.
- 김지혜 (2018). “한국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담론 분석”, 다문화사회연구, 11(2), pp.37-73.

- 김현승·박지선 (2020). “성별과 가해자 연령이 아동 성폭력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1(3), pp.287-307.
-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pp.53-70.
- 김희정 (2017). “한국 거주 이주민 출신국에 따른 고정관념의 탐색,” 미디어, 젠더 & 문화, 32(2), pp.125-173.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pp.146-168.
- 박상조·박승관 (2016).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pp.145-177.
- 박지선·박상조 (2013).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1), pp.295-316.
- 박혜영·신호창·허종욱·서수연 (2018). “한국의 주요 언론의 보도 및 트위터 메시지에 나타난 재외동포 이미지 및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광고 PR 실학연구, 11(1), pp.98-130.
- 박희찬·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pp.27-49.
- 배준환·이춘호 (2018). “한국 인터넷 뉴스 댓글에 나타나는 재한 조선족 이미지 고찰”, 국제문화연구, 11(2), pp.83-106.
- 양동옥·국혜윤·백현경·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pp.323-345.
- 양은경 (2010).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4(5), pp.194-237.
- 이가영·인다희·김범준 (2018). “심리적 거리와 처벌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4), pp.25-40.
- 이기수·윤상연 (2017). “언론보도상 ‘잔혹 범죄’의 발생 추이와 과대추정현상 극복방안”, 경찰학논총, 12(1), pp.165-189.

- 이예림·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pp.75-97.
- 이정원·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pp.47-73.
- 이종원·윤상연·김혜진·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과 인기도에 따른 학교괴롭힘의 참여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pp.109-135.
- 정상원·권గు순 (2014). “권위주의적 성격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편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27, pp.105-133.
- 정지원·이인숙·김혜숙 (2015).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양형 판단: 이성 간 강간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64.
- 조병철·김혜숙 (2018). “제 3 자 도덕적 면허 효과: 범법자 소속 집단에 대한 지각이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1), pp.1-31.
- 조인숙·김도연 (2020). “은밀하고 모호하게 차별하기: 조선족 관련 미디어 이용, 조선족 이미지, 혐오가 암묵적 차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1(2), pp.5-37.
- 조우연 (2019). “중국동포의 이미지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62-64.
- 최승혁 (2020). “고의성 판단에 확증편향이 미치는 영향: 범죄의 전형성 및 심각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pp.329-349.
- 최승혁·허태균 (2020). “그들이라면... 그럴만하지: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2), pp.55-74.
- 최승혁·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pp.127-140.
- 허윤철·임영호 (201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6(3), pp.267-302.

- 홍세은·이현정·허태균 (2018).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pp.101-118.
- 홍지웅·주혜원·현명호 (2016). “청소년의 권위주의 성격과 친애동기가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효과: 암묵적 연합검사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3(9), pp.233-254.
- Chiricos, T. and Eschholz, S. (2002). “The racial and ethnic typification of crime and the criminal typification of race and ethnicity in local television new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4), pp.400-420.
- Critchlow, B. (1985). “The blame in the bottle: Attribution about drunke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1, pp.258-274.
- Diefenbach, D. L. and West, M. D. (2001). “Violent crime and Poisson regression: A measure and a method for cultivation analy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3), pp.432-445.
- Doerner, J. K. and Demuth, S. (2010). “The independent and joint effects of race/ethnicity, gender, and age on sentencing outcomes in US federal courts,” *Justice Quarterly*, 27(1), pp.1-27.
- Espinoza, R. K., Willis-Esqueda, C., Toscano, S. and Coons, J (2015). “The impact of ethnicity, immigration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3(3), pp.197-216.
- Estrada, F., Nilsson, A. and Pettersson, T. (2019). “The female offender-A century of registered crime and daily press reporting on women’s crime,” *Nordic Journal of Criminology*, 20(2), pp.138-156.
- Grabe, M. E., Trager, K. D., Lear, M. and Rauch, J. (2006). “Gender in crime news: A case study test of the chivalry hypothesi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9(2), pp.137-163.
- Gravelin, C. R., Biernat, M., and Bucher, C. E. (2019). “Blaming the victim of acquaintance rape: Individual, situational, and sociocultural factors,” *Frontiers in psychology*, 9, pp.1-22.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pp.4-4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Kauff, M., Asbrock, F., Thörner, S. and Wagner, U. (2013). "Side effects of multiculturalism: The interaction effect of a multicultural ideology and authoritarianism on prejudice and diversity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3), pp.305-320.
- Kite, D. and Tyson, G. A. (2004). "The impact of perpetrator gender on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1(2), pp.308-318.
- LaCosse, J., Sekaquaptewa, D., and Bennett, J. (2016). "STEM Stereotypic Attribution Bias Among Women in an Unwelcoming Science Set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0(3), pp.378-397.
- Lowder, E. M., Morrison, M., Kroner, D. G., and Desmarais, S. L. (2019). "Racial bias and LSI-R assessments in probation sentencing and outcom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6(2), pp.210-233.
- Poindexter, P. M., Smith, L., and Heider, D. (2003). "Race and ethnicity in local television news: Framing, story assignments, and source selection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4), pp.524-536.
- Romer, D., Jamieson, K. H., and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pp.88-104.
- Rozmann, N. and Levy, I. (2019) "Attribution of blame toward offenders: Victim and offender ethnicity, and observer ethnic and religious backgroun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oi: 10.1177/0886260519885914.
- Rozmann, N. and Walsh, S. D. (2018). "Perceived threat, blaming attribution, victim ethnicity and punis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6, pp.34-40.

- Rye, B. J., Greatrix, S. A. and Enright, C. S. (2006). "The case of the guilty victim: The effects of gender of victim and gender of perpetrator on attributions of blame and responsibility," *Sex Roles*, 54, pp.639-649.
- Savage, M. W., Scarduzio, J. A., Harris, K. L., Carlyle, K. E. and Sheff, S. E. (2017). "News Stori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Participant Sex, Perpetrator Sex, and Violence Severity on Seriousness, Sympathy, and Punishment Preferences," *Health Communication*, 32(6), pp.768-776.
- Singh, A. M. and Sprott, J. B. (2017). "Race matters: Public views on sentencing,"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9(3), pp.285-312.
- Stupar, S., Van de Vijver, F. J. R., Te Lindert, A. and Fontaine, J. R. J. (2014). "Multicultural attitude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perceived ethnic outgroup distance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pp.24-35.
- Wilson, J. M., and Smirles, K. (2020).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effects of type of abuse and perpetrator gen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Homicide by Offender's Ethnicity and Gender

Eunkyung Jo · Jisun Park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people's judgment of homicide offender punishment differed by offender ethnicity and offender gender. We examined if the effect of offender ethnicity and offender gender on the judgment of offender punishment was mediated by the people's perceived level of offender responsibility, and if the mediation effect was influenced by the people's level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Based on a sample of 275 people(138 males, 137 females) aged between 20 and 59, the study showed that offender gender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judgment of offender punishment, but offender ethnicity did. In other words, people's judgment of homicide offender punishment was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Additionally, for people with strong authoritarian personality, judgment of offender responsibility was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and the level of punishment was evaluated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Last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 key words: homicide, ethnic Korean in China, women, punishment judgment, authoritarian personality

미국 낙태제한입법의 흐름: 심장박동법과 향후 전망*

황 태 정**

국 | 문 | 요 | 약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인간의 근본적 가치를 둘러싸고 문제되는 낙태 관련 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맥락을 아우르는 민감한 사회적 논제이다. 미국에서 낙태의 제한을 위한 입법적 시도는 종교적 색채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은 대부분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이에 터잡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방대법원 판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이른바 ‘심장박동법’(Heartbeat Law)의 입법을 통해 낙태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의 허용·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 주장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의 존중에 대한 호소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유사한 법률들의 잇따른 무력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적 시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법률의 무력화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적 우회로가 동원되는 등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 사이의 균형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이후 입법촉구기간의 도과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해결을 위한 해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의 낙태 관련 입법과 판례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낙태의 허용과 제한의 기준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91>.

❖ 주제어 : 낙태, 낙태권, 생명권, 태아보호, 심장박동법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며

미국이 낙태를 둘러싼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2021년 9월 1일 0시를 기해 낙태 행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텍사스 심장박동법’(Texas Heartbeat Act)이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에서 50년 만에 낙태의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 된 것이다. 법률의 이름 그대로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가 가능해지는 임신 6주차 이후 낙태의 전면 금지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기초하여 낙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왔던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1973년 *Roe v. Wade* 판결 이후 반세기 동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온 임신의 지속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인간의 근본적 가치를 둘러싸고 문제되는 낙태 관련 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맥락을 아우르는 민감한 사회적 논제이며, 이에 대한 찬반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척도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미국에서 낙태의 제한을 위한 입법적 시도는 종교적 색채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은 대부분 수정헌법 규정과 이에 터잡은 연방대법원 판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그러나 미국 남부 보수주의의 아성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의 이번 입법은 그러한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헌법 위반의 소지를 회피하면서 낙태 금지를 위한 법적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은 이를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에서의 낙태 관련 논의의 역사와 미국 낙태제한입법의 새로운 흐름인 심장박동법의 최근 입법동향,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서명·발효되어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입법에서의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기존 상황과 판례이론의 변화

1. 기존의 상황

종교적 가치관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미국 사회에서 ‘생명’은 창조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인간 생명의 기원과 발현에 대한 인간의 간여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종래 미국에서는 임신 이후 태아의 낙태는 물론 임신 여부에 대한 인위적 관여 또한 법적 금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대한 존중의 요청이 커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정헌법상의 권리장전으로부터 도출되는 프라이버시권 또는 평등보호조항의 침해 등을 이유로, 개인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주법들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결혼한 부부의 피임약·피임도구 등 사용을 금지하던 코네티컷주법에 대한 위헌판결¹⁾, 미혼자에 대한 피임약 배포를 금지하던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판결²⁾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 Roe v. Wade 판결

임신과 출산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시각은 1973년 임부의 생명 보호를 위한 경우 외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텍사스주법에 대한 위헌판결³⁾을 통해 확립된 법리로 자리잡았다. 연방대법원은 이 역사적인 판결에서 ① 임부가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근거로 한다는 점, ② 그러나 이러한 임부의 권리는 무제한적인(unqualified) 것은 아니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이익(interests)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③ 다만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임부의 권리는 근본적인(fundamental) 것이므로, 주정부의 낙태제한입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법심사기준인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 standard)에 따라 평가될 것을 요

1)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2) Eisenstadt v. Baird, 405 U.S. 438 (1972)

3) Roe v. Wade, 410 U.S. 113 (1973)

한다는 점 등 낙태의 허용 및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제시하였다.

판결은 일명 ‘3분기구분법’(Trimester Framework)이라 불리는 임신기간의 구분에 따라 낙태의 자유와 제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balancing test)을 제시하였다. 주정부는 임신기간 중 1/3분기에는 의사에 의한 시술 등 최소한의 의학적 안전장치(minimal medical safeguards) 외에는 임부의 낙태권에 대한 제한을 전혀 가할 수 없고, 2/3분기에는 임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으며, 당시 의료기술 수준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viable) 3/3분기부터는 임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부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합리적 절충안이라는 호평과 이 둘 모두를 포기한 무책임한 타협안이라는 혹평을 동시에 받으며 거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련 분야 입법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 왔다.

3. 이후의 대응

Roe v. Wade 판결 이후 각 주정부는 임신 3/3분기를 제외한 낙태의 사실상 전면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각 주는 Roe v. Wade 판결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적으로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낙태시술을 위해 배우자 또는 부모(미성년자의 경우)의 동의 또는 그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는 법률, 낙태시술을 일반 클리닉이 아닌 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낙태 전 숙려기간(waiting periods)을 요구하거나 낙태 전 일정한 문건을 읽고 태아 초음파를 볼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이른바 부분출산낙태(partial-birth abortion)를 금지하는 법률 등이 그 예이다. 연방대법원은 큰 틀에서는 Roe v. Wade 판결의 기본취지에 터잡아 각 주법에 의한 이러한 낙태제한조치를 대부분 위헌으로 선언했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이를 합헌으로 보는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먼저 낙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통지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낙태에 앞서 배우자 또는 부모(18세 미만 미혼자의 경우)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미

주리주법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⁴⁾ 또한 18세 미만자가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방임이 있었고 그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부모 쌍방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고 있던 미네소타주법 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위헌이 선언되었다.⁵⁾ 다만 미네소타주법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부모 일방에 대한 통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법적 우회로(judicial bypass)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헌이라고 보았으며, 이와 아울러 부모에 대한 통지 후 48시간의 경과를 요구하는 규정 또한 합헌으로 선언되었다.

낙태시술에 대한 공적 자금·시설 등의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시술에 연방 Medicaid 기금의 사용을 제한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ies Act) Title 19의 1976년 수정안(이른바 ‘Hyde Amendment’)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⁶⁾ 유사한 맥락에서 낙태시술을 위한 연방 공무원 및 시설의 사용 금지 및 임신 24주 이후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viability)에 대한 의사의 확인의무를 규정한 미주리주법 역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⁷⁾

낙태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특정한 낙태의 방법을 금지하는 입법적 시도도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2000년 4월 이른바 ‘부분출산낙태’(partial-birth abortion)⁸⁾를 금지한 네브래스카주법 규정에 대하여 규정의 모호성, 임부의 건강에 대한 고려 미비 등이 임부의 선택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⁹⁾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2003년 11월 오히려 연방법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출산낙태금지법’(Partial-Birth Abortion Ban Act of 2003)을 입법하였는데(18 U.S.C. 1531¹⁰⁾),

4) Planned Parenthood v. Danforth, 428 U.S. 52 (1976)

5) Hodgson v. Minnesota, 497 U.S. 417 (1990)

6) Harris v. McRae, 448 U.S. 297 (1980)

7)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492 U.S. 490 (1989)

8) 법률적 정의로는 ‘낙태를 실시하는 사람이 모체에서 부분적으로 배출된 살아 있는 태아를 사망케 할 명시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정위(head-first presentation)인 경우 태아의 머리가 모체 외로 배출될 때까지, 역위(breech presentation)인 경우 태아의 배꼽을 넘어서는 신체부위가 모체 외로 배출될 때까지 의도적·고의적으로 질을 통한 분만(vaginally deliver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또는 분만의 완료 외에 부분적으로 배출된 살아 있는 태아를 사망케 하는 명시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18 U.S.C. 1531).

9) Stenberg v. Carhart, 530 U.S. 914 (2000)

10) 18 U.S.C. 1531: Partial-birth abortions prohibited

(b) As used in this section-

(1) the term “partial-birth abortion” means an abortion in which the person performing the

이 법은 예상대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캘리포니아북부, 뉴욕남부, 네브래스카 등 세 곳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되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Stenberg v. Carhart* 판결의 취지대로 동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연방법 규정이 위헌성 문제가 야기될 정도로 모호하지 않고 임부의 낙태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동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¹¹⁾ 이처럼 유사한 사안과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두 판결 사안의 본질적 차이보다는 연방대법원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결론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¹²⁾

4.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

이처럼 낙태 제한의 시기와 정도에 대한 난맥상이 계속되던 가운데, *Roe v. Wade* 판결은 1992년 큰 도전을 맞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1992년 낙태 절차에 일정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낙태를 제한하고 있던 ‘펜실베이니아 낙태통제법’(Pennsylvania Abortion Control Act of 1982)의 5개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기존 *Roe v. Wade* 판결에 중대한 변경을 가함으로써 미국 낙태제한입법의 물줄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¹³⁾

abortion-

(A) deliberately and intentionally vaginally delivers a living fetus until, in the case of a head-first presentation, the entire fetal head is outside the body of the mother, or, in the case of breech presentation, any part of the fetal trunk past the navel is outside the body of the mother,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an overt act that the person knows will kill the partially delivered living fetus; and

(B) performs the overt act, other than completion of delivery, that kills the partially delivered living fetus

11) *Gonzales v. Carhart*, 550 U.S. 124 (2007)

12) 두 판결은 모두 5:4로 위헌과 합헌이 결정되었는데, 위헌의견을 냈던 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이 2005년 7월 퇴임하고, 같은 해 10월 그 후임으로 지명되어 2006년 1월 취임한 Samuel Alito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낙태 문제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Alito 대법관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여성 구성원이었던 O'Connor 대법관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낙태에의 접근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낙태에 대한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O'Connor 대법관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3) *Planned Parenthood v. Casey*, 505 U.S. 833 (1992)

판결의 요지는 Roe v. Wade 판결 이후 20년 간 의료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태아의 생존가능성 시점을 다소 전향조정하고, 그렇게 설정된 생존가능성 시점 이전에는 각 주가 임부에게 ‘과도한 부담’(undue burden)을 지우지 않는 한 낙태제한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낙태제한입법의 가능 시점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Roe v. Wade 판결 당시와 달리 태아가 23~24주 이전에도 모체 외에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태아의 생존가능성을 판단하였던 기존의 ‘3분기구분법’(Trimester Framework)을 태아가 자궁 밖의 통상의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발달 단계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생존가능성구분법’(Viability Framework)으로 대체하였다. 생존가능성 시점 이전에는 임부에게 국가의 과도한 간섭(undue interference) 없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생존가능성 시점 이후에는 각 주가 임부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도식화하자면 3분기구분법이 낙태의 허용가능성을 허용-제한가능-금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었다면 생존가능성구분법은 이를 제한가능-금지의 2단계로 구분하였고, 이로 인해 임부가 아무런 국가의 간섭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존가능성구분법 역시 3분기구분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여성의 자유와 잠재적 생명의 보호에 대한 각 주의 정당한 이익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Roe v. Wade 판결의 핵심 판시사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낙태제한입법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판결은 낙태제한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을 기존의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 standard)에서 이른바 ‘과도부담기준’(undue burden standard)으로 변경하였다. ‘과도한 부담’(undue burden)이란 생존가능성 시점 이전 단계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선택에 본질적 장애(substantial obstacle)를 야기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판결은 “유효한 국가적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여성의 선택에 본질적 장애를 야기하는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법령은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Roe v. Wade 판결 체제의 경우 1/3분기에는 임부의 선택의 자유를 전혀

제한할 수 없었던 데 반해, 이제는 생존가능성 시점 이전이라면 각 주는 임부의 낙태의 자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본질적 장애’를 야기하지 않는 한 낙태제한입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연방대법원은 낙태제한입법 심사기준을 ‘엄격심사기준’에서 ‘과도부담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낙태제한입법에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했던 기존의 판결들¹⁴⁾을 모두 폐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펜실베이니아주 낙태통제법의 문제된 5개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였던 바, 이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통지(Spousal Notice, §3209) 조항은 남편에게 아내의 결정에 대한 지나친 권한을 주고 배우자·아동 학대 등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낙태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밖에 낙태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본인의 동의(Informed Consent, §3205), 미성년자 낙태의 경우 부모의 동의(Parental Consent, §3206), 의학적 응급상황에 대한 정의(‘Medical Emergency’ definition, §3203), 낙태제공시설 등의 보고 및 기록보관 의무(Reporting Requirements, §§3207(b), 3214(f)) 등 규정은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은 Roe v. Wade 판결의 세 가지 핵심 판시사항(essential holding)¹⁵⁾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낙태제한입법의 가능 시점과 그러한 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의 변경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각 주의 낙태제한입법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Ⅲ. 심장박동법과 방아쇠법의 등장

Roe v. Wade 판결은 임부의 낙태권을 수정헌법 제14조의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이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14) City of Akron v. Akron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462 U.S. 416 (1983); Thornburgh v.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476 U.S. 747 (1986) 등.

15) ① 여성은 태아의 생존가능성 시점 이전에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undue interference) 없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② 각 주는 태아의 생존가능성 시점 이후에는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제한할 수 있으며, ③ 각 주는 임신의 시작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

이었다. 그럼에도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종교적 색채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려기간이나 동의·통지 등 다양한 조건의 부과, 연방이나 주의 공적 자금 지원 제한, 일정한 낙태방법의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은 낙태의 ‘금지’라기보다는 허용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제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을 낙태의 허용과 금지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던 기존의 판례이론 아래서 태아의 보호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1. 심장박동법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운동가들이 고안해낸 것이 이른바 ‘태아심장박동법’(Fetus Heartbeat Law)이었다.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의 허용·금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학적으로 임신 6주차 안팎이면 질내초음파(intrusive vaginal ultrasound)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임신 6주차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주장은 태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논증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의 정서에 호소하는 직관적·감성적 입법정책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는 종교계를 포함한 기존의 낙태반대론자(Pro-Life)들이 주장해 온 태아의 보호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가. 2013년 이후 심장박동법 입법 동향

미국에서 최초로 심장박동법이 제정된 곳은 아칸소주였다. 2013년 1월 28일 접수된 법안(SB134)은 2월 21일 주하원을, 2월 28일 주상원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Mike Beebe 주지사는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법안은 주하원의 재의결(override)을 거친 끝에 2013년 3월 6일 ‘아칸소 인간심장박동보호법’(Arkansas Human Heartbeat Protection Act)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¹⁶⁾ 이 법은 낙태제공자가

16) 동법의 입법경과와 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https://www.arkleg.state.ar.us/Bills/Detail?ddBien>

낙태 전 표준의료검사(standard medical practice), 즉 복부초음파검사(abdominal ultrasound test)를 통해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하도록 하고(§20-16-1303(b)),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된 이후에는 낙태가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주요 신체기능에 본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장애의 중대한 위험(serious risk of substantial and irreversible impairment of a major bodily function)을 초래하거나, 태아의 치명적인 장애(highly lethal fetal disorder)로 낙태가 필요하거나,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를 제외한(§20-16-1305(b))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20-16-1304(a)), 이를 위반한 낙태제공자의 면허를 박탈하는(§20-16-1304(b))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칸소동부연방지방법원 Susan Webber Wright 판사는 2013년 5월 16일 동법에 대한 잠정 적용중지(Preliminary Injunction)를 명하였고, 2014년 3월 14일에는 동법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였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2015년 5월 27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2016년 1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부하며 제8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법률은 위헌으로 확정되었다.

노스다코타주 역시 아칸소주와 같은 시기에 심장박동법을 제정하였다.¹⁷⁾ 노스다코타주법(North Dakota Century Code) 제14-02.1장 ‘낙태통제법’(Abortion Control Act)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법안(HB1456)은 2013년 1월 21일 도입되어, 2월 8일 주하원을, 3월 15일 주상원을 통과하였고, 2013년 3월 26일 Jack Dalrymple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¹⁸⁾ 이 법은 낙태제공자가 낙태를 하기 전 표준의료검사(standard medical practice)¹⁹⁾를 통해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하도록 하고 (§14-02.1-05.1.1),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면 임부의 사망 또는 주요 신체기능에 대한 본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손상의 중대한 위험(serious risk of the substantial and

niumSession=2013%2F2013R&measureno=SB134 참조. <2021.12.05. 최종검색>

17) 법률의 제정일자로 보면 2013년 3월 6일 서명된 아칸소주법이 3월 15일 서명된 노스다코타주법보다 앞서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시점으로 보면 2월 8일 주하원을 통과한 노스다코타주법이 2월 21일 주상원을 통과한 아칸소주법보다 앞선다.

18) 상세한 내용은 <https://www.legis.nd.gov/assembly/63-2013/bill-actions/ba1456.html> 참조. <2021.12.05. 최종검색>

19) 명문으로 복부초음파검사(abdominal ultrasound test)를 명시하고 있는 아칸소주법과 달리 노스다코타주법은 표준의료검사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기서의 표준의료검사는 질내초음파검사(transvaginal ultrasound test)로 이해된다.

irreversible physical impairment of a major bodily function) 등 의학적 긴급상황 이외에는 낙태를 금지하면서(§14-02.1-05.2.1), 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계조치(disciplinary action)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14-02.1-05.1.2)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⁰⁾ 아칸소주법과 비교할 때 예외적 낙태허용사유를 의학적 긴급상황만으로 좁히고, 낙태금지시기를 12주에서 심장박동 측정이 가능한 시기인 임신 6주차 무렵으로 앞당긴 이 법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아칸소주법과 마찬가지로의 길을 걸었다. 2013년 7월 22일 노스다코타연방지방법원의 Daniel Hovland 판사는 동법의 잠정 적용중지명령을 내렸고, 2014년 4월 16일 동법의 위헌을 선언하였다. 2016년 1월 연방대법원은 2015년 7월에 내려진 제8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노스다코타주법을 위헌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아이오와(2018년), 앨라배마·조지아·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오하이오(2019년), 테네시(2020년), 사우스캐롤라이나·아칸소·오클라호마·몬테나·아이다호(2021년) 등 주들이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3년 아칸소주와 노스다코타주 입법의 선례를 볼 때 이 법들이 낙태옹호단체들로부터의 소송을 피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합헌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실제로 이들 법률은 모두 법원의 위헌결정을 받았거나(아이오와, 조지아), 잠정 적용중지명령을 통해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각 주가 이러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이러한 입법 자체의 상징성과 함께 지속적인 쟁점화를 통한 여론 환기,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주효하였다. 2021년 5월 17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차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미시시피주 ‘임신주차법’(Gestational Age Act)(HB1510²¹⁾)에 대한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을 승인하였고,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Roe v. Wade 판결 이후 50년 만에 낙태의 위헌성을 전면

20) 낙태 전 미출생아의 심장박동 측정(Determination of detectable heartbeat in unborn child before abortion-Exception, §14-02.1-05.1) 및 미출생아의 심장박동 측정 후 낙태 금지(Abortion after detectable heartbeat in unborn child prohibited-Exception-Penalty, §14-02.1-05.2) 등 2개의 조문을 추가하고, 제43-17장(Physicians and Surgeons) 제31조(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의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하였다(§43-17-31.1.z.cc).

21) 참고로 2018년 3월 19일 제정된 이 법은 강간·근친상간 등에 대한 예외 없이 임신 15주차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1(4))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2019년 3월 21일 제정된 이른바 심장박동법(SB2116)과는 다른 법률이다.

재검토하게 되었다.²²⁾

나. 2021년 심장박동법 입법 현황

2021년 들어서도 이러한 입법은 줄을 잇고 있다. 2021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3월에는 아칸소주가, 4월에는 오클라호마·몬테나·아이다호주가, 그리고 5월에는 텍사스주가 이른바 심장박동법을 입법하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021년 2월 18일 Henry McMaster 주지사가 법안(SB1)에 서명함으로써 ‘사우스캐롤라이나 태아심장박동 및 낙태로부터 보호법’(South Carolina Fetal Heartbeat and Protection from Abortion Act)이 제정되었다.²³⁾ 법안은 낙태제 공자가 태아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그 영상을 임부에게 보여줄 것 (§44-41-630), 임부에게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것인지 물어볼 것 (§44-41-640) 등을 요구하고 있고, 법안은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²⁴⁾, 의학적 응급상황, 태아의 기형 등 예외사유 (§44-41-680(B))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태아의 심장박동 확인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44-41-680(A)).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및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등 낙태옹호단체들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 하였으나 아직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법원에 법률의 적용을 중지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연방지방법원 Mary Geiger Lewis 판사는 법안이 서명된 지 하루 만인 2월 19일, 법안에 대해 잠정 적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아칸소주는 2021년 3월 9일 낙태의 거의 전면적 금지를 규정한 법안(SB6)을 가결하였고, Asa Hutchinson 주지사가 이에 서명하였다.²⁵⁾ ‘아칸소 미출생아보호법’(Arkansas Unborn Child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은 낙태의 개념을 태아의 생명을 구하거나 죽은 태아를 적출하는 등 외에 임신을 중단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5-61-403(1)(a)), 심장박동 여부를 떠나 의학적 응급상황에서 임부의 생명을 구하

22)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case

23) <https://www.scstatehouse.gov/billsearch.php?billnumbers=1&session=124&summary=B> 참조.
<2021.12.05. 최종검색>

24) 낙태금지의 예외사유이나 ‘임신 20주차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 (§44-41-680(B)(1)·(2)).

25) <https://www.arkleg.state.ar.us/Bills/Detail?id=SB6&ddBienniumSession=2021%2F2021R> 참조.
<2021.12.05. 최종검색>

기 위한 경우 외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5-61-404(a)),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구금,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5-61-404(b)). 2021년 7월 20일 아칸소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 Kristine Baker는 7월 28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잠정 적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4월 26일 오클라호마주(HB2441)와 몬태나주(HB136), 4월 27일 아이다호주(HB366)가 잇따라 태아 심장박동의 측정의무와 그 이후의 낙태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세 법은 모두 임부의 사망이나 중대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아이다호주법을 제외한 두 법은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아이다호주 ‘태아심장박동미출생아보호법’(Fetal Heartbeat Preborn Child Protection Act)은 기존에 제정된 아이다호주 낙태 법들이 *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연방항소법원이 다른 심장박동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후 30일 이후 효력을 갖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⁶⁾(§18-8706 참조).

2. 방아쇠법

심장박동법을 입법한 주들 가운데는 연방대법원에서 *Roe v. Wade* 판결이 번복될 경우 해당 주에서의 낙태를 자동적으로 불법화하는 일명 ‘방아쇠법’(Trigger Law)을 제정해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아칸소·아이다호·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유타 등 11개 주가 이 법을 입법해 둔 상태이며, 오클라호마주는 2021년 4월 27일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법안(SB918²⁷⁾)이

26) 18-8706. EFFECTIVE UPON A CERTAIN OCCURRENCE.

(1) This chapter shall become effective thirty (30) days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judgment in any United States appellate court case in which the appellate court upholds a restriction or ban on abortion for a preborn child because a detectable heartbeat is present on the grounds that such restriction or ban does not violat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27) SECTION 18. This act shall become effective on and after the certifica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1.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verrules the central holding of *Roe v. Wade*, 410 U.S. 113 (1973), reaffirmed by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1992), thereby restoring to the State of Oklahoma the authority to prohibit abortion; or

11월 1일 발효되었다. 한편 앨라배마·애리조나·아칸소·미시간·미시시피·오클라호마·텍사스·웨스트버지니아·위스콘신 등 9개 주는 *Roe v. Wade* 판결 이전에 시행중이던 낙태금지법을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들 법률은 현재는 시행이 불가능하지만 *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경우 시행될 수 있다.

IV. 2021년 텍사스 심장박동법

1. 입법 경과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려고 노력해 왔다.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법률화함으로써 ‘과도한 부담’ 기준에 끊임없이 도전하였고, 2013년 이후로는 태아의 심장박동 확인 후 일정 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생존가능성’ 기준을 잠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법률들, 특히 태아의 심장박동을 이유로 생존가능성 시점 이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들은 모두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의 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용이 잠정 중지되었다. ‘텍사스 심장박동법’(Texas Heartbeat Act)은 미국에서 2013년 이후 입법된 수많은 심장박동법 중 실제로 시행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2021년 3월 11일 상원 법안 SB8 및 하원 법안 HB1515로 도입되었으며, 3월 30일 주상원을, 5월 6일 주하원을 통과하였다. 공화당 소속 Greg Abbott 주지사에 의해 2021년 5월 19일 서명된 법안은 2021년 9월 1일 발효되어 ‘텍사스 건강안전법’(Texas Health and Safety Code)의 일부가 되었다.²⁸⁾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차 무렵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이 법률은 예상대로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2. An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s adopted that restores to the State of Oklahoma the authority to prohibit abortion.

28) <https://capitol.texas.gov/BillLookup/History.aspx?LegSess=87R&Bill=SB8> 참조. <최종검색 2021. 12.05.>

텍사스주 낙태제공자인 전여성건강(Whole Woman's Health)과 재생산권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가족계획연합(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등 낙태옹호 단체들은 2021년 9월 1일로 예정된 텍사스 심장박동법의 발효를 막기 위해 7월 13일 텍사스서부연방지방법원에 법률의 잠정 적용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8월 27일 제5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청문(preliminary injunction hearing)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가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긴급 구제명령 신청 역시 즉시 기각되었다. 원고는 8월 30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명령(injunctive relief)을 신청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9월 1일 이 신청을 5:4의 표결로 기각함으로써,²⁹⁾ 1973년 Roe v. Wade 판결 이후 50년 만에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³⁰⁾

Joe Biden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법이 미국 수정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정부는 50년 전 Roe v. Wade 판결에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주법은 Roe v. Wade 판결로 확립된 헌법적 권리에 대한 노골적 침해(blatant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 established under Roe v. Wade)이며,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will significantly impair women's access to the health care they need, particularly for communities of color and individuals with low incomes)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연방법무부에 법적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하였다.

연방법무부는 법률 시행 후 8일 만인 9월 9일, 텍사스서부연방지방법원에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의 Robert L. Pitman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SB8이 발효된 순간부터 여성은 헌법이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금지되었다.”³¹⁾라고 하면서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시행을 정지하는 잠정 적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주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하였고, 이를

29) Whole Woman's Health et al. v. Austin Reeve Jackson, Judge, et al., No. 21A24

30) SB8의 입법 및 소송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사건 관련 웹사이트(<https://www.aclu.org/cases/whole-womans-health-v-jackson>) 참조. <최종검색 2021.12.05.>

31) “From the moment S.B. 8 went into effect, women have been unlawfully prevented from exercising control over their own lives in ways that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뒤인 10월 8일 제5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주정부의 항소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이를 전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잠정 적용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유예(administrative stay)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효력이 정지되었던 텍사스 심장박동법의 효력은 임시 복구(reinstate)되었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가 연방항소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동법은 효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연방법무부는 10월 18일 연방대법원에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행정유예를 해제해 달라는 긴급요청과 함께 법령의 적용 전 이의제기 허용 여부 및 주 공무원에게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결 전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접수하였던 바, 연방대법원은 10월 22일 긴급요청을 기각하면서 상고허가신청은 받아들였다.³²⁾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해 11월 1일 긴급 구두변론(expedited oral arguments)을 열면서 기존에 텍사스 낙태제공자 및 낙태옹호단체가 제기한 Whole Woman's Health v. Jackson 사건도 함께 변론하도록 하였다.³³⁾ 연방대법원은 12월 10일 피고적격을 동법 위반시 낙태제공자에게 실질적인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텍사스주 보건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주법원판사·서기 및 주법무부장관 등은 제외), 연방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하고 하급심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2. 법률의 내용과 평가

텍사스 심장박동법의 내용은 이제까지 다른 주의 입법에서 나타났던 것과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 낙태제공자에게 낙태시술 전 표준의료검사(standard medical practice)를 통해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171.203),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시술을 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171.204). 다만 낙태제공자가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의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낙태의 허용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171.205). 특이한 점은 낙태의 단속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동법은 누구든지(any person) 동법을 위반하여 낙태를 하거나 이에 조력한(aids or abets) 자에 대한 민

32) United States v. Texas, et al., No. 21A85

33) https://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argument_transcript/2021 참조. <최종검색 2021. 12.12.>

사소송(civil action)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171.208(a)), 승소하면 소송비용과 함께 법정배상금(statutory damage) 명목으로 낙태 1건 당 최소 10,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1.208(b)).³⁴⁾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타주 심장박동법과 달리 이른바 ‘낙태제한에 대한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낙태의 금지영역을 대폭 넓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주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박동 측정을 요구하면서도 일정 임신주차 이후의 낙태만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입법된 심장박동법의 90% 이상이 임신 12~13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미시시피주 ‘임신주차법’(Gestational Age Act) 역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가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텍사스주법은 이러한 추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태아의 심장박동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임신 6주차 이후의 낙태는 금지되며, 이는 사실상 낙태의 전면 금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텍사스주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85% 이상이 임신 6주차 이후의 것이라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우려는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다. 또한 각 주의 입법은 보통 임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및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 낙태금지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텍사스주법은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에 대한 예외만을 규정하고(§171.205) 강간·근친상간에 대한 예

34) Sec. 171.208. Civil Liability for Violation or Aiding or Abetting Violation.

- (a) Any person, other than an officer or employee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al entity in this state, may bring a civil action against any person who:
 - (1) performs or induces an abortion in violation of this subchapter;
 - (2) knowingly engages in conduct that aids or abets the performance or inducement of an abortion, including paying for or reimbursing the costs of an abortion through insurance or otherwise, if the abortion is performed or induced in violation of this subchapter,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the abortion would be performed or induced in violation of this subchapter; or
 - (3) intends to engage in the conduct described by Subdivision (1) or (2).
- (b) If a claimant prevails in an action brought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award:
 - (1) injunctive relief sufficient to prevent the defendant from violating this subchapter or engaging in acts that aid or abet violations of this subchapter;
 - (2) statutory damages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10,000 for each abortion that the defendant performed or induced in violation of this subchapter, and for each abortion performed or induced in violation of this subchapter that the defendant aided or abetted; and
 - (3) costs and attorney's fees.

외를 두고 있지 않다. 낙태 금지시점이 임부가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임신 6주차 무렵으로 앞당겨져 있고, 예외적인 낙태 허용사유는 의학적 응급상황만으로 좁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은 그간 입법되었던 각 주의 낙태제한법들 중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텍사스주법만의 결정적인 특징은 국가가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이를 100% 시민들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이다. 단순히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이 입법방식은 낙태금지를 위한 텍사스주 입법자들의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Roe v. Wade 판결의 취지는 요약하자면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 주의 심장박동법이 하나같이 위헌판단을 면치 못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주법은 낙태를 금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의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낙태를 금지하지만 그 단속이나 처벌의 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낙태시술을 한 자 외에 이에 조력한 자를 소송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절묘한 아이디어였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공범의 개념에도 포함되지 못할 단순조력자, 예컨대 낙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돕는 낙태옹호단체나 성직자, 극단적으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한 우버기사 등도 이 법에 따른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당한 배상금이 걸린 민사소송에 직면할 두려움이 이들에게 가져올 냉각효과(chilling effect)는 예상되고도 남을 일이다.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심장박동 확인 후 낙태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 가능해진다는 임신 6주차는 임부가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적 금지나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초음파로 감지되는 태아의 심장박동은 전기적 충격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 태아의 심장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시민이 다른 시민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부적절하는 지적도 많다. 이는 시민이 서로를 감시하는 일종의 ‘자경단 시스템’(vigilante system)이나 마찬가지로, 낙태제공자 등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노린 이른바 ‘현상금 사냥꾼’(bounty hunter)이 등장할 길도 열어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독특한 낙태단속 시스템으로 인해 법원의 유효한 관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극단적으로는 향후 타주의 연쇄적인 모방입법이 이어져, 결국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허용되지만 (사실상) 금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V. 미국 낙태제한법의 향후 전망

2021년 10월 8일 내려진 연방항소법원의 행정유예(administrative stay) 결정은 잠정적인 것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제5연방항소법원이 Barack Obama 대통령이 임명한 Pitman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텍사스 주 정부의 편에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을 내린 연방항소법원 재판부의 판사 2명이 공화당 대통령 재임 중에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되었다. Bill Clinton 대통령이 임명한 Carl E. Stewart 판사 외에, Catharina Haynes 판사는 George W. Bush 대통령이, James C. Ho 판사는 Donald J. Trump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히 Ho 판사는 전 텍사스주 법무부차관(solicitor general)을 역임하였고, Greg Abbott 현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주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었을 때 함께 일했던 관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텍사스 심장박동법의 발효를 막기 위해 전여성건강(Whole Woman's Health) 등 원고가 제기한 긴급 구제명령(injunctive relief) 신청을 5:4의 표결로 기각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법률의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 기각과 유사한 의미이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텍사스주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해도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법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시기적·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낙태정책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먼저 이번 결정이 시기적으로 임신 15주차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2019년 미시시피주법(HB1510)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연방대법원은 2021년 5월 17일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주정부의 상고허가신청(petition of certiorari)을 받아들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동법의 위헌성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³⁵⁾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제시한 복수의 논점 중 심사대상을 ‘생존가능성 시점 이전 낙태금지의 위헌 여부’(Whether all pre-viability prohibitions on elective abortions are unconstitutional)라는 단일논점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Roe v. Wade 판결 후 50년,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 후 30년 만에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의 위헌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긴급 구제명령신청 기각결정의 다수의견은 이번 결정이 “텍사스주법의 합헌성에 대한 어떠한 결론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is not based on any conclusion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Texas’s law)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낙태정책의 기초가 재검토되는 시기에 내려진 이번 결정이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예고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또한 이와 함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지형이다. 2020년 10월 Donald Trump 대통령은 임기말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타계한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의 후임으로 Amy Coney Barrett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였다. Barrett 대법관의 취임으로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지형은 보수6:진보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었다.³⁶⁾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비교적 선명한 낙태에 대한 이번 결정 역시 이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중 John G. Roberts 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Alito, Barrett, Gorsuch, Kavanaugh, Thomas 대법관)은 기각의견을, 진보성향 대법관 3명(Breyer, Kagan, Sotomayor 대법관)은 인용의견을 냈다. 공화당의 Trump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3명(Kavanaugh, Gorsuch, Barrett 대법관)이 전원 기각의견을 냈음은 물론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시금석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35)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36)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Ginsburg 대법관과 달리 그 후임인 Barrett 대법관은 보수성향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출산 전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고도 막내아들을 출산한 7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기류는 2021년 12월 1일 열린 미시시피주법 위헌심사를 위한 구두변론(oral arguments)에서 좀 더 확실히 드러났다. 변론절차에서 대법관들의 질문과 토론 내용은 향후 판결의 내용을 예측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논의는 *Roe v. Wade* 판결의 번복이 가져올 연방대법원의 정치화 및 그로 인한 연방대법원의 신뢰 상실 우려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미국 헌법의 어떤 규정이 낙태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는지(Thomas 대법관), 낙태 권리가 헌법 및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근거를 두고는 있는 것인지(Alito 대법관) 등 낙태권 인정에 대한 회의론으로부터, 왜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문제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Kavanaugh 대법관)와 같은 법원의 역할론, 기존 판례가 강조하는 ‘양육의 부담’은 입양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Barret 대법관)는 대안론, 나이가 근본적으로는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종래 낙태 허용의 기준이 되었던 ‘생존가능성’ 개념 자체가 부적절했다(Gorsuch 대법관)는 낙태논쟁의 본질론까지 낙태권의 인정을 둘러싼 다양한 반론이 쏟아졌다. 텍사스주법에 대한 긴급 구제신청 결정에서 인용의견을 냈던 Roberts 대법원장은 *Roe v. Wade*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다수 국가의 기준과 비슷하게,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을 지지할 것을 제안하는 절충적인 견해를 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가 6:3의 구도로 그가 더 이상 캐스팅보터가 아닌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이다.³⁷⁾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022년 6~7월 무렵으로 예상되고 있다.

V. 마치며

2019년 4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과와 함께 개선입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여 동조의 계속적용을 명하였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개시하였고, 21대 국회의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32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7) 구두변론 절차에서 대법관들의 발언 및 토론과 이에 대한 간략한 논평은 <https://www.nytimes.com/2021/12/02/briefing/supreme-court-abortion-case-mississippi.html> 참조. <최종검색 2021.12.05.>

중 정부안을 포함한 7건의 법안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각계의 우려와 논란 끝에 성안된 개선입법안은 ①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 주차와 무관하게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법안(권인숙·이은주·박주민의원안), ②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Roe v. Wade* 판결의 ‘3분기구분법’(Trimester Framework)의 취지에 따라 임신기간을 14주 이전, 15~24주, 25주 이후로 나누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차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요건 등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정부안), ③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제한 없이,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10주 이내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서정숙의원안), ④ 태아의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태아와 여성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한국형 심장박동법안(조해진의원안)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은 대립하는 양 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에서 공전하던 중 결국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을 초과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한 법적 공백과 함께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낙태는 임부의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헌법상 기본권성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양자는 모두 인간의 실존과 삶의 본질적인 영역에 위치하는 가치들로서, 한 권리의 확실한 보장을 이유로 다른 권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부의 낙태권을 사실상 몰각하는 심장박동법이나, 독자적 생존가능성 단계에 이른 태아의 생명보호를 도외시하는 낙태자유법은 일면의 타당성만을 가질 뿐이다. 대립하는 두 권리가 필요최소한도의 제약을 감수하면서 각자의 기능과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자의 해안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낙태권 논쟁과 이를 둘러싼 최근의 입법 및 판례의 동향이 그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법령자료〉

<https://capitol.texas.gov/BillLookup/History.aspx?LegSess=87R&Bill=SB8>
<https://www.arkleg.state.ar.us/Bills/Detail?ddBienniumSession=2013%2F2013R&measureno=SB134>
<https://www.arkleg.state.ar.us/Bills/Detail?id=SB6&ddBienniumSession=2021%2F2021R>
<https://www.legis.nd.gov/assembly/63-2013/bill-actions/ba1456.html>
<https://www.scstatehouse.gov/billsearch.php?billnumbers=1&session=124&summary=B>

〈판례자료〉

Eisenstadt v. Baird, 405 U.S. 438 (1972)
Gonzales v. Carhart, 550 U.S. 124 (2007)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Harris v. McRae, 448 U.S. 297 (1980)
Hodgson v. Minnesota, 497 U.S. 417 (1990)
Planned Parenthood v. Casey, 505 U.S. 833 (1992)
Planned Parenthood v. Danforth, 428 U.S. 52 (1976)
Roe v. Wade, 410 U.S. 113 (1973)
Stenberg v. Carhart, 530 U.S. 914 (2000)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492 U.S. 490 (1989)
Whole Woman's Health et al. v. Austin Reeve Jackson, Judge, et al., No. 21A24
United States v. Texas, et al., No. 21A85

〈기타 인터넷자료〉

https://www.supremecourt.gov/oral_arguments/argument_transcript/2021

<https://www.aclu.org/cases/whole-womans-health-v-jackson>)

<https://www.nytimes.com/2021/12/02/briefing/supreme-court-abortion-case-mississippi.html>

The Flow of Abortion Restriction Legislation in the US: The Heartbeat Act and Future Prospects

Hwang, Tae-Jeong*

The issue of abortion, which is a problem around the fundamental human values of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is a sensitive social topic that encompasses various context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Legislative attempts to restrict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consistently made mainly in states with strong religious and conservative tendencies.

Under such circumstances, since 2013, legislative movem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tricting abortion through legislation of the so-called 'Heartbeat Law' have been spreading in the United States. This argument that abortions should be allowed or restricted based on the 'heartbeat', which symbolizes life, is actually one of the attempts to ban most abortions by appealing to the absolute value of respect for life. Despite of laws incapacitated by the court's decision, these legislative attempts have expanded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in recent years, legislative detours have been mobilized to evade the nullification of the law.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a possible imbalance.

In Korea, a legislative vacuum on abortion continu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crime of abortion in 2019.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tried to find ideas about the standards for the allowance and restriction of abortion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flow of abortion-related legislation and precedents in the US.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Ph.D. in Law.

❖ key words: Abortion, Right of Abortion, Right of Life, Protection of Fetus,
Heartbeat Law

일본에서의 보안처분 제도 도입과 그 한계에 관한 검토

배상균* · 손여옥**

국 | 문 | 요 | 약

최근 형사정책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보안처분의 약진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2007년에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비롯해 지난 15여 년 동안 한국의 형사입법 분야에서 재범방지 수단으로서 다수의 신종 보안처분 종류들이 생긴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입되었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새로이 도입된 각종 보안처분은 각 영역에서 재범억제에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됨에 따라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것이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적용기간도 연장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재차 '보호수용법'이 발의되는 등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또는 배제하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사회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위해 대상자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의 근거와는 다른 특단의 정당화 근거, 즉 재범 위험성의 명확성을 필요로 하고 또한 어디까지나 부수적 처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안처분 제도 도입에 관한 일본의 신중한 태도는 일정 부분 우리에게 참고가 되며, 우리는 과제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그렇게 재정립된 관계하에서의 보안처분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교하고도 합리적인 절차, 즉 재범 위험성의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117>.

❖ 주제어 : 보안처분, 보안처분의 필요성,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 재범위험성, 이중처벌금지

* 주저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I. 서론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이란 형벌만으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범죄행위자 또는 정신장애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 이외의 범죄예방 처분을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사회보호법’을 통해 보안처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보안처분 제도의 내재적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채 운용되었기 때문에, 입법 이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오다가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성이 크다는 이유로 2005년 폐지되었다. 다만, 치료감호는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¹⁾

최근 우리 형사정책에서 보안처분의 약진은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²⁾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³⁾이 제정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위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도입되는 등, 특히 성범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형사제재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한국 형사 입법분야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다수의 신종 보안처분이 도입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기 성범죄에 한정되어 도입되었던 보안처분은 운용과정에서 재범 억제효과를 인정받으며⁴⁾ 지금은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간도 늘어났다.

이처럼 보안처분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더

1) 김혜정,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형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2013, 131면.

2)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제27권 제4호, 2015, 3면.

3) 2020년 2월 4일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4)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장래위험의 예측이 상당히 구체화 되고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러한 위험이 ‘완벽히’ 예측 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는 박상민, “형사제재의 실질적 이원주의 정립을 위한 소고 -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20, 39면 이하를 참조할 것.

많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한 범죄로부터의 안전 욕구로 가속화되어 2010년 법정형 인상이라는 형벌의 강화로 이어졌다. 언제나 그렇듯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억제할 수 없음에도, 일반 시민의 안전 욕구를 대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 보안처분을 통해 형기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이 재차 발의되었다.⁵⁾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우리 사회는 과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한 후 진일보해 왔는데, 이를 다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라며,⁶⁾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보안처분이 형벌과 달리 과거의 행위책임을 근거로 하지 않고 대상자의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투입되는 형사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해도 합목적성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⁷⁾ 즉 보안처분은 사회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위해 대상자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의 근거와는 다른 특단의 정당화 근거, 즉 재범 위험성의 명확성을 필요로 하고 또한 어디까지나 부수적 처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 검토로서 일본의 보안처분 제도와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운용 중인 보안처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5) 보호수용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되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수용법안의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안으로는, 김병욱의원 등 19인, 2020. 9. 16.(의안번호 2103953); 양금희의원 등 91인, 2020. 9. 24.(의안번호 2104225); 김철민의원 등 11인, 2021. 1. 29. (의안번호 2107800)이 계류되어 있다.

6) 한겨레(2021.1.21.), “인권위, ‘흉악범 재격리’ 보호수용법에 “기본권 침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9777.html#csidx08fc796fd9ed4a978c5ce2c8222c18 (최종검색: 2021.11.28.).

7) 정지훈,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 - 가칭 ‘보안감독’으로의 통합적 재편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2020, 64면.

II. 일본에서의 보안처분에 관한 논의

1. 일본에서의 보안처분의 의미

가. 개관

보안처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사회방위와 본인의 교정 및 교육(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처분을 말한다.⁸⁾ 가장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은 범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형벌 이외의 개선·교육·보호 그 밖의 모든 처분을 의미한다. 한편 가장 좁은 의미의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행위자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형벌 이외의 자유 박탈적 처분을 의미한다.⁹⁾

한편 형벌은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상응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응관계는 현대에 이르러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변인이 나타남에 따라 형벌과 유사한 불이익 처분이 다소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범죄와 형벌의 상응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형벌 유사 제재로서 도입된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관한 대응이지만, 보안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이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보안처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보안(保安)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많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가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용어 자체도 오히려, 형사치료처분¹¹⁾이라든가 개선·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¹²⁾

그러나, 이러한 보안(保安)보다도 적극적인 치료 및 개선에서 정당화 근거를 도출하

8) 団藤重光『刑法綱要總論(第3版)』(創文社, 1990年) 603頁, 大谷實『刑法講義總論 新版第3版』(成文堂, 2009年) 548頁.

9) 藤吉和史「わが国における治療処分の可能性」中央学院大学法学論叢16卷第2号(2003年) 162頁.

10) 前田忠弘・松原英世・平山真理・前野育三『刑事政策がわかる』(法律文化社, 2014年) 63頁.

11) 예를 들면, 정신장애로 인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신병원 수용처분을 내리거나 마약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마약 또는 알코올 근절조치 처분을 내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井田良『講義刑法学 総論(第2版)』(有斐閣, 2018年) 607頁.

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험성 예측 하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의 인권침해 문제를 염려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보안처분의 요건으로 한다면, 그것은 더는 형사정책으로서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복지정책상의 의료처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에 관하여 재범 위험성에서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¹³⁾ 이에 따라 보안처분의 개념도 어디까지나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형벌 이외의 자유 제한 및 자유 박탈적 처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원주의

보안처분의 의의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형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형벌의 목적을 ‘응보’로서 보는 응보형론의 입장에서는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해악인 것에 대해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개별 제도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동시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일원주의라고 한다.¹⁴⁾ 여러 해외국가에서는 형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같이 선고하고 있지만, 일본의 형법전에는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벌만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특별예방 내지 개선형론의 입장에서는 보안처분도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형벌과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일원주의도 있다.

이러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일본의 학계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원주의가 다수설을 점하고 있다.¹⁵⁾ 즉 형벌에서도 특별예방이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므로, 그러한 점에서 형벌도 보안처분과 공통된 성질을 가지지만, 형벌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책임주의에 따른 응보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장래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과 응보를 기초로 하는 형벌에 대하여 양자를 동일성을 가진 제도로서 보는 일원주의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구파이자 응보형론의 입장에서는 왜 보안처분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게 되면,

13) 大谷實『新版 刑事政策講義』(弘文堂, 2009年) 159頁.

14) 井田・前掲注12) 607頁.

15) 大谷・前掲注8) 548-549頁.

그것은 형벌이 행위자에게 책임 한도에서만 과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벌과는 다른 특별예방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정신장애자나 중독자, 상습범죄자 등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도 사회방위 및 안전을 위해 장기간의 자유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나,¹⁶⁾ 이로 인해 이중처벌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다. 재범위험성 판단과 보안처분 법정주의

1) 재범의 위험성

보안처분은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은 범죄자에게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보안처분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가 장래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위험성에 대하여 특별예방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는 행위자가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정확히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라 할 수 있다.¹⁷⁾ 예를 들어, 피처분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해소되면 보안처분을 종료해야만 하지만, 반대로,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보안처분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부정기(不定期)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¹⁸⁾

2) 보안처분 법정주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하나, 장래의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은 피처분자

16) 井田・前掲注12) 607頁.

17) 木村裕三・平田紳 『刑事政策概論(第5版)』(成文堂, 2013年) 133-134頁, 大谷・前掲注13) 155頁.

18) 木村・平田・前掲注17) 134頁, 大谷・前掲注13) 159頁.

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과 동일하다.¹⁹⁾ 형법의 경우에도 죄형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그 자체로서 인권보장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처분을 법률로 정하고 사회방위의 목적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안처분 법정주의라고 하며, 그 내용으로는 피처분자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위험성, 보안처분의 종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²⁰⁾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죄요건의 실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판단은 반드시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소급금지의 원칙 등 피처분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형법과 동일하게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²¹⁾

2. 일본에서의 보안처분 도입에 관한 경과

일본에서 처음으로 보안처분 개념이 검토된 것은 1921년 정부가 임시 법제심의회에 형법개정강령의 자문을 한 후부터였다. 이후 1926년 임시 법제심의회는 40항목에 이르는 ‘형법개정 강령(綱領)’을 제출하였다. 이 제출을 근거로 1931년에는 ‘개정형법가안’의 총칙 부분이, 1940년에는 ‘개정형법가안’의 각칙 부분이 공포되었다. 이하에서는 보안처분 반대론이 거셌던 1970년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안처분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한다.

가. 1920년대-1945년

이 시기 보안처분은 고전파와 근대파의 논쟁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안처분의 도입 여부보다는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성에 무게가 실려있었다. 옹보형을 취하는 고전파는 보안처분을 형벌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보았고, 목적형론을 취하는 근대파

19) 大谷・前掲注13) 159頁.

20) 岩井宜子 『刑事政策(第7版)』(尚学社, 2018年) 258-259頁, 大谷・前掲注13) 159頁.

21) 大谷・前掲注13) 160頁.

는 보안처분과 형벌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²²⁾ 이 시기 보안처분의 대상은 ‘정신장애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은 전쟁 등의 이유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일부 내용은 각각의 법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41년 「치안유지법」 개정과정에서 가안의 예방처분이 예방구금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것 등을 들 수 있다.²³⁾

나. 1945년-1950년대

패전 후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지령으로 치안 형법의 대부분이 폐지되었다. 보안처분에 관한 논쟁은 기존의 논의가 재차 계속되었지만, 주목할 부분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일시하는 근대파의 주장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다.²⁴⁾ 또한 당연히게도 국가주의 관점에서 보안처분을 바라보던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다. 1960년대 이후: ‘개정형법초안’의 공표

1947년 일본 헌법이 시행되면서 형법개정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1956년 법무성형사국 내에는 ‘형법개정준비회’라는 비공식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를 통해 1961년 ‘개정형법준비초안’이 공표되었다.²⁵⁾ 이후 법제심의회 내에서도 ‘형사법 특별부회’를 마련하여 형법의 개정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법제심의회는 1972년 형사법특별부회가 작성한 초안을 원안으로 수정을 가하여 1974년 개정형법초안을 제출하였다.²⁶⁾ 초안 작성 과정의 논의를 살펴보면 보안처분의 구체적 대상이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22) 喜多加実代 「保安処分をめぐる言説と「精神障害犯罪者」」年報社会学論集第7号(1994年) 145-146頁.

23) 稲田朗子 「保安処分に関する一考察: 法制審議会刑事法特別部会における議論の検証」高知論叢第96号(2009年) 85頁.

24) 喜多・前掲注22) 146頁.

25) 稲田・前掲注23) 86頁.

26) 稲田・前掲注23) 86頁.

3. 개정형법초안과 보안처분

일본에서는 1926년 부터, 형법상 보안처분 도입이 검토되었다. 다만, 개정형법가안, 개정형법준비초안, 개정형법초안 등에는 다소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안처분 도입에 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²⁷⁾ 이 중 1974년 5월 29일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에서 결정된 개정형법초안 작성과정에서 보안처분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기에 이를 간단히 살펴본다.

가. 개정형법초안 작성과정에서의 보안처분에 관한 논의

1963년 법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법제심사위원회 내에는 ‘형사법특별부회’가 마련되었다. 동 심사회는 1963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71년까지 30회의 회의를 거듭하였다.²⁸⁾ 1966년에는 형법개정에 관한 형사법연구자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약 80%의 응답자가 - 준비초안에 전체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 치료처분과 금절(禁絶)처분에 관하여 찬성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²⁹⁾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형법초안 작성과정에서 보안처분의 도입이 거론된 배경에는 정신장애자나 마약 및 알코올중독자가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는 정신장애나 마약 및 알코올중독에 기인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형사법특별부회에서는 기존의 제도가 정신장애자나 마약 및 알코올중독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형사법특별부회 A안)을 제시하였는데, 도입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大谷・前掲注13) 163頁.

28) 稲田・前掲注23) 87頁.

29) 齊藤豊治「保安処分をめぐる法意識」法社会学第36号(1984年) 101頁, 楠本孝「保安処分論議の今日的総括」法律時報第74卷第2号(2002年) 18頁.

30) 일본에서는 1940년대부터 범죄율과 재범율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1948년부터 2006년까지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100만 명을 무작위 선별하여 범죄전과를 조사한 결과, 총 범죄자 전과별 인원수에서는 초범자가 71%, 재범자가 29%로 나타났지만, 범죄 건수 현황에서는 재범자에 의한 범죄 건수가 58%로 나타나 재범자에 의한 범죄 발생이 많다는 점이 통계상 입증되었다(犯罪対策閣僚會議『再犯防止に向けた総合対策』(2012年) 1頁).

우선 책임능력은 인정되지만, 정신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도 의료교도소에서 특별처우가 이루어지지만, 형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행정적 조치로서 입원조치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치료에 중점을 둔 제도이고 위험한 정신장애자나 마약 및 알코올중독자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실제 운용에서도 사법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입원조치 대상자가 입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입원을 해도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퇴원하는 예도 적지 않아 재범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등이다.³¹⁾

이러한 형사법특별부회 A안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것이 대상자에게도 정신과 의료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맥락에서 또 다른 개선안(형사법특별부회 B안)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첫 번째로 정신위생법에 근거한 정신의료체계 및 그 운용이 재범방지라는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책임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그 부작용으로서 본래 치료처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위한 처분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도 이바지한다.

두 번째로 정신위생법상의 제도는 보안(保安)적인 목적을 담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치료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관여 없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인권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가 과거와 달리 개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범죄성이 강한 대상자를 다른 정신장애자와 같은 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은 시설 운용에 관해서도 좋지 않으며, 정신의료 전체가 보안적 처우라는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다.

형사법특별부회 B안은 A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보완한 것이다. 예를 들어, ① 보안처분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요호처분(療護処分)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② 수용시설을 법무성관할 요호시설과 후생성관할 의료시설(정신병원)로 양분하여 어느

31) 川出敏裕·金光旭 『刑事政策』(成文堂, 2012年) 109-110頁.

32) 稲田·前掲注23) 111-118頁, 川出·金·前掲注31) 110頁.

쪽에 수용할지는 법원이 치료를 중시할지, 범죄성의 제거를 중시할지에 따라 결정하며, 이에 따라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는지 치료처분적 성격을 가지는지가 구분되고, 예를 들어, 후생성관할 의료시설(정신병원)에서의 치료처분을 받게 될 자는 기본적으로 통상의 입원환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 ③ 수용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제한하는 것, ④ 형벌과 요호처분을 모두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벌보다 요호처분을 우선 집행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에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것, ⑤ 사회 내 요호(療護)관찰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³³⁾

이처럼 형사법특별위원회에서는 보안처분의 도입에 관하여 2가지 안(A안과 B안)이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A안이 초안으로 채택되었다.

1) 개정형법초안에서의 보안처분 규제내용

위 논의를 거쳐 형사법특별위원회는 법제심의회에 개정형법초안(A안)을 제출하였고 법제심의회는 이를 검토한 후, 1974년 개정형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형법초안에서 규정된 보안처분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처분과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처분으로 2종의 보안처분을 도입하였다. 즉 양 처분은 ① 유죄판결 또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서도 선고될 수 있다(일본 개정형법초안 제97조 제1항). 다만 ② 책임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소추가 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특별절차를 통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 초안 동조 제2항).³⁴⁾ 또한 ③ 보안시설에서 출소한 후에도 사회내 처우로서 요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다(동 초안 제106조). 즉 요호관찰의 경우에는 가출소의 경우만이 아니라 출소의 경우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 처분은 모두 보안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금만을 전제로 하는 예방구금은 아니며, 보안(保安)시설은 교도소가 아닌 기타 법무성관할 시설을 의미한다.³⁵⁾

다른 한편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선고된 경우에는, 형벌의 집행을 선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일본 개정형법초안 제108조). 이는 형법이 행위책임을 기본으로

33) 川出・金・前掲注31) 111頁.

34) 前野育三・前田忠弘・松原英世・平山真理 『刑事政策のすすめ—法学的犯罪学(第2版)』(法律文化社, 2007年) 50頁.

35) 川出・金・前掲注31) 108頁.

하고 있는 이상, 형벌이 원칙이고 보안처분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예외적으로 보호처분을 선행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도중에도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게 하였다(동 초안 제109조).³⁶⁾ 또한 형벌 및 보안처분 중 어느 한쪽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것이 종료한 시점에 또 다른 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다.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남은 처분이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해제’를, 형벌인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개정형법초안 제110조).³⁷⁾

2) 치료처분과 금절처분

치료처분은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치료 및 간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래에 반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보안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일본 개정형법초안 제98조). 기간은 3년으로 갱신은 2년마다 2회까지 가능하지만(동 초안 제100조 제1항),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갱신에 제한이 없어(동 초안 제100조 제2항), 이론상 무기한 연장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있다.³⁸⁾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에 대한 금절(禁絶)처분은 ① 과도한 음주 또는 마약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일 것, ② 그 습벽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것, ③ 그 습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장래에 반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할 우려가 있을 것, ④ 보안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일본 개정형법초안 제101조). 치료처분과 달리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책임능력자도 대상자가 된다. 기간은 1년으로 갱신은 1년마다 2회까지 가능하다(동 초안 제103조). 따라서 최대 3년간만 금절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치료처분과 차이가 있다.³⁹⁾

36) 川出・金・前掲注31) 109頁.

37) 川出・金・前掲注31) 109頁.

38) 前野・前田・松原・平山・前掲注34) 51頁.

39) 前野・前田・松原・平山・前掲注34) 51頁.

나. 개정형법초안의 보안처분에 대한 반대론

위 논의과정을 거쳐 1974년 개정형법초안이 공표되었으나 공표됨과 동시에 ‘개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⁴⁰⁾ 더욱이 이러한 보안처분 반대론은 일본 법학계를 넘어 신경정신학계, 언론계, 노동조합, 여성단체, 학생단체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한편, 이러한 반대론은 보안처분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와 개정형법초안의 보안처분 규정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반대론으로 구분된다.

보안처분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로서는 일본신경정신학회의 ‘보안처분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대표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신장애자나 마약 및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고 현행 제도가 불충분하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될 뿐 형법상의 제도로서 보안처분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②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장기간의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장래의 위험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에 근거한 구금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③ 구금된 상태에서의 치료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고 결국 장기간의 구금만을 내용으로 하는 예방구금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 ④ 정신장애자는 위험하다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 주장되었다.⁴¹⁾

다른 한편으로, 보안처분 자체는 긍정하나 개정형법초안의 보안처분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개정형법초안이 중벌화 경향을 보이면서(법정형의 상향, 신종 범죄 유형 추가, 부정기형 신설) 보안처분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과 보안처분 규정의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반대하였다.⁴²⁾ 특히, ① ‘보안상 필요가 있을 때’라는 요건의 불명확성과 ② 일률적으로 법무성관할의 보안처분 시설에 수용한다는 점, ③ 치료처분에 관해서는 무기한 시설수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제도 전반에 걸쳐서 보안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비판을 하였다.⁴³⁾

이처럼 개정형법초안의 보안처분 제도는 도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 이후 법무성에서 재차 수정하여 ‘보안처분 제도(형사국안)의 골자’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40) 稲田・前掲注23) 86-87頁.

41) 木村・平田・前掲注17) 140頁.

42) 喜多加実代 「触法精神障害者という問題: 1970年代における精神医療批判としての保安処分反対論」 福岡教育大学紀要第2分冊社会科学編第60号(2013年) 1頁.

43) 川出・金・前掲注31) 110-111頁.

이마저도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강해 결국 장기간의 격리수용을 전제로 한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 제도의 도입을 단념하였다.⁴⁴⁾

Ⅲ. 일본의 보안처분 제도와 운용 현황

1.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진 현행법상 처분 및 조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형법전에는 보안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법규에서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진 강제처분이나 조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매춘방지법상 보도(補導)처분, 갱생보호법상 보호관찰제도, 심신상실자 등 의료관찰법상 의료관찰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정신장애로 인해 자상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입힐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정병원에 강제입원조치가 가능한 조치로서 정신보건복지법상 입원조치가 있다. 다만 이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의료처우 및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도처분

보도(補導)처분은 매춘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하지 않음에도 범죄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자유 박탈적 시설수용을 강제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다만 보도처분은 ‘사회방위’ 보다는 성매매 여성 본인의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보안처분과 구별된다.⁴⁵⁾

「매춘방지법」⁴⁶⁾ 제1조는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성도덕에 반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임을 고려하여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성행

44) 中山研一 『刑法改正と保安処分』(成文堂, 1986年) 87頁以下.

45) 法務省 「第三編 第二章 婦人補導院における処遇」『犯罪白書(昭和39年版)』 https://hakusyo1.moj.go.jp/jp/5/nfm/n_5_2_3_2_0_0.html (최종검색: 2021.11.28.).

46) 売春防止法(昭和三十一年法律第百十八号).

또는 환경에 비추어 성매매의 우려가 있는 여성에 대한 보도처분과 보호갱생조치를 통하여 성매매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은 매춘의 권유(제5조) 등의 죄를 범한 2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같은 조의 죄 또는 같은 조의 죄와 다른 죄에 관련된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대하여 그 형의 전부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사람을 보도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도처분을 받은 자는 부인(婦人)보도원⁴⁷⁾에 수용되어 개선·갱생에 필요한 생활지도 및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그 개선·갱생에 방해가 되는 심신장애를 치료한다(일본 매춘방지법 제17조 제2항). 보도처분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동법 제18조). 지방갱생보호위원회는 상당하고 인정되는 때에 결정으로 보도처분을 받은 자의 가퇴원을 허가할 수 있는데(동법 제25조), 가퇴원이 허가된 사람은 보도처분의 잔여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동법 제26조).

1980년 이후의 부인보도원의 입·출원 상황을 정리한 일본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및 1981년에 각각 신규 수용 인원이 20명이었는데, 1982년부터 1991년까지는 1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단, 1986년은 0명), 1992년 이후로는 1995년 및 2005년에 각각 1명이 신규 수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0명이었다. 출원은 대부분 퇴원으로 출원했으며 1970년에 3명, 1973년에 1명이 보호관찰부 가퇴원하였다.⁴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수용인원은 4명이었다. 같은 시기에 검거된 인원이 2,412명이라는 점에 비추면 평균 수용률은 약 0.2%에 그친다. 보도처분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애당초 형사처분보다는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되기 쉬운 민간복지지원시설 입소가 적합한 여성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⁴⁹⁾

나.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고 보도(補導) 원조하여 일반사회 속에서 대상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에는 중국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일본 갱생보호법⁵⁰⁾ 제48조 제1호 등)과 형 집행유예에 수반하여 선고되는 보호관찰(동법 동조 제4

47) 과거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세 군데가 있었으나 현재는 도쿄 한 군데만 남아있다.

48) 法務総合研究所『女性と犯罪(動向)』法務総合研究所研究部報告第48号(2012年) 175-176頁.

49) 東京新聞(2020年4月20日)「売春防止法違反の女性を「処罰」…婦人補導院に廃止求める声」<https://www.tokyo-np.co.jp/article/17110> (최종검색: 2021.11.28.).

호), 소년원 등에서의 가퇴원과 교도소에서의 가석방에 수반하여 선고되는 보호관찰(동법 동조 제4호) 등이 있다.

일본에서도 보호관찰은 불필요한 형벌의 집행을 피하면서 사회 내 처우로서 적극적인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운용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의 보호관찰은 우리와 달리 어디까지나 성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자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의 경우만이 존재한다. 보호관찰의 구체적 운용 방법 등은 일본 갱생보호법에서 규정한다. 범죄자에게는 본래 자조(自助)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보도 원조하는 것과 준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일본 갱생보호법 제49조).⁵¹⁾ 이러한 일본 보호관찰제도의 특징은 보호관찰제도를 보호관찰관 보다 민간 독지가(篤志家) 중에서 선임된 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에 있다.

한편, 2016년에 새로이 도입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⁵²⁾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기만료 가석방자가 4,128명(전년 대비 6.6% 감소), 일부 집행유예부 가석방자가 362명(동 16.0% 증가), 보호관찰부 전부 집행유예자가 7,969명(동 9.0% 감소), 보호관찰부 일부 집행유예자가 2,150명(동 87.6% 증가)으로 나타났다.⁵³⁾

2. 심신상실자 등 의료관찰제도와 치료처분

가. 개관

일본에서는 2001년 6월에 발생한 오사가 이케다초등학교 아동살해사건을 계기로 2003년 7월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他害行為)⁵⁴⁾를 한 자의 의료

50) 更生保護法(平成十九年法律第八十八号).

51) 大谷・前掲注8) 553頁.

52) 일본에서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는 형사사건의 판결로, 징역 또는 금고 등 실형의 형기 내에 일부를 형의 집행유예기간으로서 합쳐서 선고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단, 이 중 1년은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중, 피고인을 보호관찰에 처한다’라고 선고된다.

53) 法務省 『令和2年版犯罪白書』(2020年) https://hakusyo1.moj.go.jp/jp/67/nfm/n67_2_2_5_3_1.html (최종검색: 2021.11.28.).

54) 타해행위(他害行為)란, 타인이나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정도의 행위를 말한다.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⁵⁵⁾은 중대한 타해행위(살인,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상해 및 상해치사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①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된 경우, ② 기소 후, 재판에서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③ 기소 후, 재판에서 심신박약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에 대해 해당 범죄자를 강제입원 또는 강제통원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33조).

이러한 심판은 법관과 정신보건심판원(학식경험이 있는 의사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다)의 합의체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입원이나 통원에 의한 치료를 결정한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42조 제1항).⁵⁶⁾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 의한 정신보건관찰처분 등이 이루어진다(동법 제34조). 대상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요건은 ‘대상행위를 하였을 때의 정신장애를 개선하여 이에 수반한 같은 행위의 반복을 막고,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입원 또는 통원시켜 이 법률에 의한 의료처우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동법 제34조),⁵⁷⁾ 대상자는 보호자를 선임하여, 의료의 종료나 퇴원 허가를 신청(동법 제40조)할 수 있다.

본 제도에 대해서는 의료적 관점과 사회방위적 관점을 적절히 조율한 양자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⁵⁸⁾

55)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号).

56) 岩井・前掲注20) 264頁.

57) 前田・松原・平山・前野・前掲注10) 65頁.

58) 前田・松原・平山・前野・前掲注10) 65頁.

〈표 1〉 정신장애자 등의 형법범 검거인원(2019년 기준)

구분	총수	살인	강도	방화	강제성교등 · 강제추행	상해 · 폭행	협박	절도	사기	기타
검거인원 (A)	192,607	924	1,064	519	4,104	46,482	2,764	94,144	8,843	33,223
정신장애자 등(B)	1,977	91	32	79	44	568	78	505	68	512
정신장애자	1,280	56	22	53	32	364	51	312	40	350
정신장애 의심자	697	35	10	26	12	204	27	193	28	162
B/A(%)	1.0	9.8	2.0	15.2	1.1	1.2	2.8	0.5	0.8	1.5

주: 1) 경찰청 통계에 따름
2) ‘정신장애자 등’은 ‘정신장애자’(조현병, 정신작용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혹은 의존증, 지적장애, 신경병질 또는 기타 신경질환을 지닌 자를 말함. 신경보건지정의 진단에 따른 의료 및 보호대상자에 한함) 및 ‘정신장애 의심자’(「정신보건복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지사에게 통지대상자가 되는 자들 중 정신장애자 이외의 자)를 말함
3 ‘강제성교 등’은 2017년 법률 제72호에 따른 형법개정 이전의 강간을 포함함
출처: 法務省 『令和2年版犯罪白書』(2020年) 204頁.

나. 심판절차

1) 대상자

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대상행위(살인,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상해 및 상해치사죄)를 범하였고, ②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인정되어 ③ 이를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판결은 받은 사람,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형이 감경되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2조 제2항).

2) 검사의 신청

검사는 대상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 형의 감경 및 집행유예의 선고 등이 있는 때에는 의료관찰처우의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판단을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33조 제1항).

3) 법원에 의한 심판절차

심판은 1인의 법관과 1인의 정신보건심판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진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11조). 정신보건심판원이란, 학식경험을 가진 의사 중에서 지방법원이 매년 선임한 사람 중에서, 치우사건 마다 지방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6조). 또한 합의체는 필요에 따라 정신장애자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정신보건참여원’을 심판에 참가시킬 수 있다(동법 제36조).

지방법원 법관은 원칙적으로 감정 기타 의료적 관찰을 위해 대상자를 중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감정입원명령에 의한 입원기간은 2개월 이내에 한정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3항). 동 기간 중에 법원은 학식경험을 가진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하며(동법 제37조 제1항), 이러한 감정은 정신보건심판원과 는 별개의 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대상자의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38조).

4) 법원의 결정

우선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관하여 대상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나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검사의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40조 제1항).

반면에 치우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 때에는, 의사에 의한 감정 결과에 근거하면서 또한 대상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서, ‘대상행위를 범했을 때의 정신장애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료처분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① 입원치료 결정, ② 통원치료 결정 ③ 불치우의 결정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42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강제처분은 장신장애자에 한정되나 엄밀한 의미에서 현행법상 유일한 보안처분이며,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 입원 또는 통원 조치를 할 수 있다.⁵⁹⁾

59) 大谷・前掲注13) 162頁 °

〈표 2〉 검찰 신청인원 및 지방법원의 심판 종국처리인원(대상행위별, 2019년 기준)

대상행위	검찰 신청인원				종국처리인원							
	총수	불기소	확정재판		총수	입원결정	퇴원결정	의료 불 사행결 정	각하		철회	신청 부 적합에 의한 각하
			무죄	전부집 행유예 등					대상행 위를 했 다고 인 정할 수 없음	심신미 약자 등 이 아님		
총수	274	251	4	19	282	212	23	37	2	7	1	-
방화	64	59	-	5	67	49	11	5	2	-	-	-
강제성교 등	4	4	-	-	9	6	1	2	-	-	-	-
살인	90	82	2	6	90	68	9	12	-	1	-	-
상해	109	100	2	7	109	83	2	17	-	6	1	-
강도	7	6	-	1	7	6	-	1	-	-	-	-

주: 1) 사법통계연보와 법무성형사국 및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각 자료에 따름
2) ‘대상행위’는 형법상 범죄조항에 규정성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함(「심신상실자등 의료관찰법」 제2조제1항 참조)
3)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 비현주건조물방화 및 건조물 등 이외 방화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연소 및 소화 방화에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4) ‘강제성교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2017년 형법개정전의 강간을 포함함
5) ‘살인’은 살인예비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6) ‘상해’는 현장에서 부추기는 행위(現場助勢)는 포함하지 않음
7) ‘강도’는 강도 및 사후강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단, 예비는 제외)를 말함. 혼수상태에 빠뜨려 물건을 훔치는 행위(昏醉強盜)는 포함하지 않음
8) ‘전부집행유예 등’은 징역 또는 금고의 실행 판결로 집행할 형기가 없는 것을 포함함
9) 복수 대상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은 가장 무거운 법정형으로 함. 복수 대상행위의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상행위 칸에서 들고 있는 칸에서 들고있는 것에 계상(計上)함
출처: 法務省 『令和2年版犯罪白書』(2020年) 206頁.

5) 항고

검사 또는 대상자, 보호자 등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의료관찰법 제64조). 또한 항고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최고재판소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70조).

다. 대상자에 대한 처우

1) 입원치료

입원결정을 받은 사람은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지정입원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43조 제1항). 지정입원의료기관이란,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을 통과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정독립행정법인이 설립한 병원 중에서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기본적으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상 상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실무에서는 대략 18개월 이내에 퇴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과정(급성기(12주), 회복기(36주), 사회복귀기(24주))을 진행하고 있다.⁶⁰⁾

2) 통원치료

통원치료 결정은 받은 사람 또는 가퇴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정통원의료기관’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2항, 제51조 제3항). 지정통원의료기관이란,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을 통과한 병원 중에서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동법 제16조 제2항).

통원치료 기간은 처우종료 결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차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 제44조).

한편, 통원치료 결정을 받은 사람은 통원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의한 정신보건관찰을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관찰은 대상자와 적절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정통원의료기관의 관리자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내용의 보고를 요청하여, 해당 대상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와 생활상황을 감독하면서, 원활하게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

60) 岩井・前掲注20) 267頁.

관찰법 제106조).

〈표 3〉 일본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에 의한 입원대상자 성별 현황(2021년 4월 기준)

치료단계	남성	여성	합계
급성기	95명	21명	116명
회복기	341명	100명	441명
사회복귀준비기	173명	51명	224명
합계	609명	172명	781명

출처: 厚生労働省「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による入院対象者の状況」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sinsin/nyuin.html (최종검색: 2021.11.28.).

3. 정신보건복지법상 정신장애자에 대한 입원조치

가. 개관

일본 정신보건복지법⁶¹⁾은 정신장애자의 의료보건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50년 제정 당시에는 ‘정신위생법’으로 명명되었으나, 1987년 ‘정신보건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였다. 이후, 1995년 개정에서 현재 법률명인 ‘정신보건복지법’으로 또 한차례 변경하였다.⁶²⁾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 대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범죄 대책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한 기능 중 핵심은 입원제도이다.⁶³⁾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입원의 형태는 ① 본인의 동의에 근거한 ‘임의입원’(일본 정신보건복지법 제22조의3)과, ②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되는 ‘의료보호입원’(동법 제33조), ③ 본인, 보호자 동의 여부와 무관한 강제 입원조치로서 ‘입원조

61)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二十三号).

62) 厚生労働省「精神保健福祉法について」<https://www.mhlw.go.jp/kokoro/nation/law.html> (최종검색: 2021.11.28.).

63) 川出・金・前掲注31) 394頁.

치'(동법 제29조)이 있다. 이중 ②와 ③의 경우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므로 강제입원에 해당한다.

특히 범죄대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입원조치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검사, 보호관찰소장, 교도소장은 정신장애자 또는 정신장애 의심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상자가 정신장애자이고 또한 정신장애로 인해 자상행위 또는 타해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가에 관한 판단을 2인 이상의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지정의사의 진찰 결과의 일치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진찰 결과가 일치하면 대상자를 국·공립 정신병원이나 기타 지정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⁶⁴⁾

나. 입원조치제도의 문제점

입원조치제도에 관해서는 다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입원조치를 결정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원조치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나, 범죄대책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⁶⁵⁾

다음으로, 범죄방지의 관점에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즉 범죄성이 강한 축법정신장애자를 다른 일반 정신장애자와 같은 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치료처우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반 정신장애자의 치료임에도 편견에 빠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정신의료 전체가 보안적 처우라는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⁶⁶⁾ 따라서 범죄방지를 위한 전문화된 치료환경이 더욱 조성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퇴원 후의 관리 및 감독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확보를 위한 실효적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⁶⁷⁾

64) 川出・金・前掲注31) 394頁.

65) 大谷・前掲注13) 427頁.

66) 川出・金・前掲注31) 395頁.

67) 大谷・前掲注13) 427頁.

IV. 시사점 및 결론

일본에서는 일찍이 보안처분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주로 정신장애자나 마약·알코올중독자, 상습범에 대한 ‘격리수용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학계 및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이후 정신장애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 및 입원조치를 중심으로 한 ‘심신상실자등의료관찰법’이 2003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많은 해외국가에서 도입·운용 중인 각종 자유 제한적이거나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 제도의 도입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실효성이 검증된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는 형벌과 형벌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형벌은 어디까지나 행위책임에 기반한 응보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벌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에 의해 범죄자의 ‘속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일본의 형사재판실무로서 양형 현황을 살펴보아도 법정형이 훨씬 폭넓은 우리에 비해 법정형의 폭이 좁은 일본에서 더 중한 양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⁶⁸⁾ 또한 현재도 사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형벌을 받은 출소자에 대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상공개제나 취업제한, 거주제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에의 출입제한과 같이 자유박탈이 아닌 자유제한적 사회내 보안처분일지라도 일체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법 환경과 ‘형벌관’과는 다른 점이 많다.

또한 우리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하면서, 성범죄 대책을 중심으로 보안처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2002년 범죄발생 최고치를 경험한 후 현재까지 17년 연속 범죄발생율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형법범 인지건수는 748,559건으로 일본에서는 1946년 이래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⁶⁹⁾ 이는 인구수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국가임에도 우리의 범죄발생건수(2019년

68) 石原一彦ほか編『現代刑罰法大系(第6巻)』(日本評論社, 1982年) 150頁, 原田國男『量刑判断の実際(第3版)』(立花書房, 2008年) 50頁, 裴相均「韓国における法定刑の引上げと刑事立法に関する一考察」比較法雑誌第48巻第3号(2014年) 321-324頁参照.

형법범 1,041,395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으로도 확인된다.⁷⁰⁾ 따라서 이러한 범죄 감소 상황 속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최근 일본에서도 스토킹범죄나 성범죄에 대한 범죄대책으로서 전자감시제도 등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⁷¹⁾ 향후 보안처분 제도 운용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감시제도 등의 재범억제 효과가 지난 10년간의 운용 결과로서 명확히 확인되었고,⁷²⁾ 현재는 어떻게 효율적이면서도 인권 친화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당면과제로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⁷³⁾ 그 외의 보안처분의 재범방지 효과가 크거나 적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신중 보안처분 제도의 재범방지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① 입법자나 형사실무에서 법익보호라고 하는 목적달성을 형벌이라는 수단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형벌’의 임무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이,⁷⁴⁾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2010년에 개정된 법정형 인상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물론, 현재 운용되고 있는 9개의 형벌에 대해서도 각각 그 기능을 재검토하여 추가 또는 변경의 여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 입법자 및 실무상 보안처분에 대해 거는 기대가 과도하거나 신봉하는 측면에 대한 운용상의 반성도 필요하다.⁷⁵⁾

특히 형벌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보안처분임에도 오히려 더 장기간의 보안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니, 형벌을 낮추는 듯한 이른바 역전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이원주의적 이중처벌의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실무상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69) 法務省 『令和2年版犯罪白書』(2020年) 2-3頁.

70)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65면.

71) 甘利航司 「電子監視—「今まで」と「これから」—」犯罪社会学研究第42号(2017年) 171頁以下, 甘利航司 「電子監視と保護観察の在り方」龍谷法学第43卷第1号(2010年) 129頁以下, 西山智之 「累犯・性犯罪者に対する特別法の制定に関する研究」法政論叢第51卷第2号(2015年) 131頁以下.

72) 법무연수원, 앞의 책, 436면.

73) 연성진·유진, 『전자감시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B-06, 2015, 113면 이하를 참조.

74) 김성돈, 앞의 논문, 29면.

75) 김성돈, 앞의 논문, 29면.

러한 보안처분의 오남용 현상에 대해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즉 형벌과 보안처분은 양자가 본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름에도 실무상 자유제한적 강제처분으로서 동일하게 인식되기 쉬워, 양형단계에서 보안처분 적용여부에 따라 형벌의 양이 조정되는 역전현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기인한다.

물론 이를 근거로 우리 형법의 목적이 ‘응보’에서 예방으로, 즉 ‘특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안처분의 운용현황은 형벌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 각종 장기간의 부착기간이나, 신상공개 및 등록제도 등 보안처분의 중첩 적용 문제 등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비례성원칙, 더 나아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⁷⁶⁾

물론 전자장치부착법 이외의 보안처분에서도 보이는 이러한 입법 경향은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안처분이 형벌을 넘어서 선고되는 것은 범죄자의 현재의 ‘행위’에 근거한 책임주의의 의미를 몰각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2005년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그토록 중요시한 사회 안전을 위한 개인의 자유 희생이라는 공리주의적, 전체주의적 프레임의 해소라는 사회적 담론의 의미가 이제 더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안처분 제도 도입에 관한 일본의 신중한 태도는 일정 부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 보안처분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의 효용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남은 과제로서는 ①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여, 남발되고 있는 각종 보안처분의 기간 연장의 추세에 제동을 걸고 그 기간을 축소해야만 현재의 예방구금적 성격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⁷⁷⁾ 또한 ② 이렇게 재정립된 관계하에서 활성화된

76) 김성돈, 앞의 논문, 30면.

77)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보안처분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교하고도 합리적인 절차, 즉 재범 위험성의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⁷⁸⁾ 그래야만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최소침해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계속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작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작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작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작기간을 부작기간으로 한다.
 - ③ 부작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작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하 생략)

78) 이러한 합리적 재범 위험성 평가 절차 도입에 관한 연구로서, 장진환, “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 형 집행 종료 후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21, 57-94면 등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 연성진·유진,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B-06, 2015
-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제27권 제4호, 2015
- 김혜정,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형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2013
- 박상민, “형사제재의 실질적 이원주의 정립을 위한 소고 -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20
- 장진환, “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 형 집행 종료 후 보안처
분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21
- 정지훈,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 - 가칭 ‘보안감독’으로의 통합적 재판방안
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2020
- 石原一彦ほか編 『現代刑罰法大系(第6巻)』(日本評論社, 1982年)
- 井田良 『講義刑法學 總論(第2版)』(有斐閣, 2018年)
- 岩井宜子 『刑事政策(第7版)』(尚學社, 2018年)
- 大谷實 『刑法講義總論 新版第3版』(成文堂, 2009年)
- 大谷實 『新版 刑事政策講義』(弘文堂, 2009年)
- 川出敏裕·金光旭 『刑事政策』(成文堂, 2012年)
- 木村裕三·平田紳 『刑事政策概論(第5版)』(成文堂, 2013年)
- 団藤重光 『刑法綱要總論(第3版)』(創文社, 1990年)
- 中山研一 『刑法改正と保安處分』(成文堂, 1986年)
- 犯罪對策閣僚會議 『再犯防止に向けた總合對策』(2012年)
- 原田國男 『量刑判斷の實際(第3版)』(立花書房, 2008年)
- 法務省 『令和2年版犯罪白書』(2020年)
- 法務總合研究所 『女性と犯罪(動向)』 法務總合研究所研究部報告第48号(2012年)
- 前田忠弘·松原英世·平山眞理·前野育三 『刑事政策がわかる』(法律文化社, 2014年)

前野育三・前田忠弘・松原英世・平山眞理 『刑事政策のすすめ—法學的犯罪學(第2版)』
(法律文化社, 2007年)

甘利航司 「電子監視—「今まで」と「これから」—」 犯罪社會學研究第42号(2017年)

甘利航司 「電子監視と保護觀察の在り方」 龍谷法學第43卷第1号(2010年)

稻田朗子 「保安處分に關する一考察: 法制審議會刑事法特別部會における議論の檢
証」 高知論叢第96号(2009年)

喜多加實代 「触法精神障害者という問題: 1970年代における精神医療批判としての
保安處分反對論」 福岡教育大學紀要第2分冊社會科編第60号(2013年)

喜多加實代 「保安處分をめぐる言説と「精神障害犯罪者」」 年報社會學論集第7号
(1994年)

楠本孝 「保安處分論議の今日的總括」 法律時報第74卷第2号(2002年)

齊藤豊治 「保安處分をめぐる法意識」 法社會學第36号(1984年)

西山智之 「累犯性犯罪者に對する特別法の制定に關する研究」 法政論叢第51卷第2
号(2015年)

藤吉和史 「わが國における治療處分の可能性」 中央學院大學法學論叢16卷第2号
(2003年)

裴相均 「韓國における法定刑の引上げと刑事立法に關する一考察」 比較法雜誌第48
卷第3号(2014年)

한겨레(2021.1.21.), “인권위, ‘흉악범 재격리’ 보호수용법에 “기본권 침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9777.html#csidx08fc796fd9ed4a978c5ce2c8222c18 (최종검색: 2021.11.28.).

法務省 「第三編 第二章 婦人補導院における處遇」 『犯罪白書(昭和39年版)』
https://hakusyo1.moj.go.jp/jp/5/nfm/n_5_2_3_2_0_0.html (최종검색: 2021.11.28.).

東京新聞(2020年4月20日) 「賣春防止法違反の女性を「處罰」… 婦人補導院に廢止求
める聲」 <https://www.tokyo-np.co.jp/article/17110> (최종검색: 2021.11.28.).

法務省 『令和2年版犯罪白書』(2020年) https://hakusyo1.moj.go.jp/jp/67/nfm/n67_2_

2_5_3_1.html(최종검색: 2021.11.28.).

厚生労働省 「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による入院対象者の状況」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sinsin/nyuin.html(최종검색: 2021.11.28.).

厚生労働省 「精神保健福祉法について」 <https://www.mhlw.go.jp/kokoro/nation/law.html> (최종검색: 2021.11.28.).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limitations of the security measures in Japan

Bae Sangkyun* · Son Yeook**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ecent criminal policies is that it has made great strides in security measures. This phenomenon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many new types of security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field over the past 15 years, including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troduced in 2007. Such security measures were introduced in a fast and active social atmosphere to protect ordinary citizens and protect society from violent crimes such as sexual crimes. The new security measures have proved to be effective in suppressing recidivism in various fields, and the introduction of sexual crimes can be applied to murder and robbery crimes, and the applica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However, since security measures force individual sacrifices for the benefit of social security, they need to be clarified and incidental to the risk of recidivis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asis of punishment. In this regard, Japan's cautious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security measures system is useful to us to some extent.

❖ key words: security measure, necessity of security measure,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security measure, recidivism risk,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투고일 : 12월 7일 / 심사일 : 12월 28일 / 게재확정일 : 12월 28일
--

* First Auth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Ph.D. in Law

** Corresponding Author: Full-time Researcher,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Ph.D. in Law

형사정책연구 봄호 논문투고 안내

형사정책연구 '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접수 마감일은 2022년 2월 28일(월)까지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내용

- 제목(한글 및 외국어)
- 성명, 소속 및 직위(한글 및 외국어)
 -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
- 초록(한글 및 외국어)
-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
- 본문(항목번호는 I,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며 제목위, 아래 한행씩 띄어준다)
 - ※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고 번역문인 경우 원문 별도 첨부
 - 외국어는 단일언어 표기시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번역본을 첨부
- 참고문헌(국내, 구미, 일본의 순으로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정리, 단 구미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발행연도 순으로 구성)
- 각주(논문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명시)
- 제목, 성명, 소속 및 직위, 초록 주제어의 외국어 작성시, 반드시 영문을 포함하여 작성

2. 원고작성

-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 글자모양 및 크기 : 신명조체 11포인트(각주는 10포인트)
- 줄 간격 : 180%
- 분량 : A4 20매 내외(최대 25매 초과 불가)
- 작성 : 한글 프로그램 사용

3. 투고자격 및 심사

- 원고 투고자의 자격은 학계의 대학교수, 실무계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형사정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경력자로 한다.
- 제출된 원고는 형사정책 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 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4. 원고접수 마감 및 제출처

- 원고접수 마감일 : 2022년 2월 28일(월)
- 제출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홍보팀(담당: 구교원)
- 이메일 : kic_journal@kicj.re.kr
- 전 화 : 02) 3460-5100
 - ※ 원고,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는 별도 서명없이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해당 양식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cj.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IM AND SC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a biannual and peer-reviewed English journal publish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facilitates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idence-based research on crime trends in order to make a contribution to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The IJCJ will share academic and practical views from home and abroad and play a pivotal role as an international academic arena for criminal justice policies.

SUBMISSION DETAILS

-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nd should be no more than 10,000 words in MS word.
- Please provide an abstract which should be no more than 200 words in length and a maximum of 5 key words.
- All papers should identify all authors and provide their contact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full postal addresses, email addresses, affiliations and so on.
-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y have written entirely original works, and should not publish manuscripts describing essentially the same research in more than one journal.
- Honorarium (USD 2,000 or KRW 2,000,000) will be paid when paper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 All manuscripts must be submitted to the managing editor Ms. Hyewon KWON at ijcj@kicj.re.kr

AR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invites paper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y issues related to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will be welcomed such as:

Community Sanction, Corrections, Corruption & White Collar Crime, Crime Prevention & Protection, Crime Trends, Crime & Deviance,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Law & Policy, Criminal Procedure, Cybercrime, Drug, Terrorism & Organized Crime, Economic & Corporate Crime, Information, Technology & Forensic Scienc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Penology, Police & Policing, Violent Crime.

간행물출판위원회

위원장 : 이 천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위 원 : 강 지 현 (울산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

강 태 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 지 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 한 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동 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동 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최 영 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 준 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탁 희 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 지 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가나다 순)

간 사 : 구 교 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선임행정원)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28호, 2021·겨울호)

발행인 : 하 태 훈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3460-5184

등 록 : 1990년 4월 3일 바-1360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인 쇄 : 고려씨엔피
전화 (02)2277-1508

본 학술지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함

[정가 : 10,000원]

